

2013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

취약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 ▶ 일시 : 2014년 3월 4일(화) 15:00 ~ 17:00
- ▶ 장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층 다산홀

인사말 ■ ■ ■

모든 만물이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다시 힘찬 도약을 준비하는 생명의 계절을 맞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지난 한 해 수행한 연구 성과들을 널리 공유하고 확산시키고자 두 차례에 걸쳐 연구성과 발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차 발표회에서는 '취약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주제로 청소년 한부모, 학업중단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일하는 청소년 등 어려운 성장 환경과 여건에 있는 청소년들의 실태와 정책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청소년의 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지원'이라는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취약한 청소년집단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모든 청소년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혜와 노력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학업중단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그리고 아르바이트 청소년 관련 연구는 2014년도에도 후속 연구가 수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의 연구성과에 기반을 두어 이들 청소년의 삶의 개선을 위한 더 유익한 연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2차 발표회에서는 '청소년정책의 발전과 전망'을 주제로 후기청소년(고졸 비진학) 정책과제,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청소년보호 방안,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동안 정책관심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던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청소년정책 대상으로 재조명하고,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폰의 영향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청소년정책의 외연을 넓혔으며,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지표 개발을 통해 16개 시·도 청소년의 행복과 삶의 질 현황을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청소년 행복마을 연구는 2022년까지 10년간 수행되는 장기과제로 청소년 행복마을 시범사업과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2040년까지의 환경변화를 전망하고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를 전망하는 연구는 2개년 연구의 첫 해 연구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해 수행된 연구결과들이 보다 내실 있고 발전적인 청소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바쁘신 중에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전문가분들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 3월 4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이 재연

세 부 일 정

시 간	진 행 내 용
15:00~15:10	▣ 개회사 - 이재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15:10~16:30	사회 : 최창욱(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II ▶ 발표자 : 김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자 : 김혜영(숙명여자대학교 교수)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 발표자 : 윤철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자 : 김성기(협성대학교 교수) ▣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발표자 : 양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자 : 신현옥(한양대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연구위원)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 발표자 : 안선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자 : 이상준(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16:30~17:00	▣ 종합토론
17:00	▣ 폐회

목 차

발 표

- ▶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I 1
김 지 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21
윤 철 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51
양 계 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85
안 선 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1

.....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I

김 지 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황 여 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I¹⁾

1. 문제제기

정책 대상으로서의 청소년 한부모는「한부모가족지원법」을 근거로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모 혹은 아버지’이다(제4조 제1항의 2). 최근 출산 후 자녀 양육을 선택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고, 사회 환경과 정책 여건의 변화로 청소년 한부모가구 규모 역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²⁾ 청소년 한부모의 절대다수는 미혼모로 추정되나, 미혼모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국가통계는 부재하다. 다만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청소년 한부모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여성가족부가 2010년부터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시작한 이래 지원가구도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다(2010년 1,222가구 → 11년 1,620가구 → 2012년 1,831가구).

청소년기 임신, 출산의 세계적인 경향을 볼 때 최근 10년간 OECD 국가의 청소년(15~19세 이하) 출산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일본을 포함한 우리나라는 19세 이하 청소년 인구 1천 명 당 출생아 수는 5명 내외로 낮은 수준이지만, 같은 기간 청소년의 출생아 수가 2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들조차 청소년 출산을 사회문제로 보는 이유는 청소년기 출산은 청소년 자신과 그 자녀에게 불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사회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출산율이 감소 이면에는 청소년기의 원하지 않는 임신에 대한 예방정책의 성공뿐 아니라 낙태 허용에 따른 결과가 공존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따른 낙태는 불법으로

1) 이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로 2012년부터 2년에 걸쳐 추진되었으며, 본 원고는 2차년도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하였으나 1차년도 조사 결과를 일부 포함하였음.

2)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자료 중 청소년(12~24세)의 ‘혼외자 및 미상’ 출산 건수를 분석한 결과 혼외자는 매년 1천명에서 1천 700여 명, 미상은 매년 9백 여 명에서 1천 500여 명에 달하였다. 특히 24세 이하 청소년의 분만 건수는 매년 2만 건을 훨씬 상회하고 있고 이는 전체 분만 건수의 5~6%에 달하는 규모이다(통계청, 2011).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의 낙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생존 출산율(live birth rate)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 임신, 출산 문제가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 전체 출산에서 혼외 출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5% 수준으로 프랑스, 스웨덴 등 주요 OECD 국가가 50%를 넘는 것과 매우 대조된다. 이는 미혼남녀의 자녀 출산을 사회통념을 벗어난 행위로 보거나 자녀의 출산은 합법적인 혼인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혈연관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이다. 낙태 허용 여부를 포함하여 청소년기 임신, 출산에 대한 시각은 나라마다 상이한데 이는 각국의 청소년정책, 가족정책에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청소년의 성행동, 임신, 출산 모두를 일탈, 지위 비행, 이례적인 행위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이로 인해 임신한 청소년 상당수는 불법을 감행해서라도 출산을 포기하거나, 출산을 하더라도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하는 등 청소년기 임신, 출산(낙태 포함), 자녀 양육(입양 포함)은 아동·청소년의 생명윤리문제, 인권문제, 건강·보건 문제 야기하고 있다.

출산 이후 입양이 아닌 양육을 선택한 청소년 한부모가 처한 상황도 매우 다양하다. 민법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중등학교 재학 연령에 속하는 청소년과 19세 이상 성년에 이르러 성인기에 접어든 청소년이 혼재하고, 심지어 「아동복지법」상 18세 미만자인 ‘아동’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상당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들 대다수가 학업중단 등으로 저학력, 비숙련 상태에서 자녀양육과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어 정부와 가족지원이 없을 경우 성인기 이후 만성 빈곤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한부모가구 빈곤율은 26.7%에 달하며 이는 스웨덴(7%), 덴마크(6.8%)와 비교할 때 4배에 달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청소년 한부모는 학업중단, 빈곤 등 취약·위기상황으로 인해 인권, 기본권 보장에 있어 취약성에 노출된 소수자(minority)라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청소년 한부모의 인권, 기본권을 토대로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연구결과는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연구내용

이 연구는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협동연구로 2년에 걸쳐 추진하였다.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

은 궁극적으로 임신, 출산, 양육지원이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질 때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관점을 반영하여 1차년에는 청소년 한부모의 발생 경로와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고 예방적 접근과 양육 청소년 한부모 지원방안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2차년에는 청소년의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한 청소년의 기본권을 이론적 토대로 현행 법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유형 및 생활주기를 고려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1) 청소년 한부모의 유형 및 생활주기에 따른 쟁점

(1) 1차년도(2012년) 연구내용

청소년 한부모 관련 선행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임신·출산·자녀 양육과 관련한 전반적인 실태와 정책 요구도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양육 청소년 한부모를 포함한 임신, 출산, 입양 경험이 있는 24세 이하 여자 청소년 463명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청소년 한부모의 연령(19세 미만)을 기준으로 (미혼) 모자 관련 시설 입소 경험, 성교육, 성 경험 및 피임 경험, 임신 및 낙태 경험, 출산 및 자녀 양육 여건,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 인지 및 수혜 경험 등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청소년 한부모 관련 정책 및 서비스 현황과 OECD 국가의 청소년 임신·출산 경향과 한부모 지원정책을 분석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발생 경로에 따른 예방 및 지원정책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2) 2차년도(2013년) 연구내용

2차년 연구는 1차년 연구를 기반으로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여건을 점검하고 유형 및 생활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 정책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임신 중인 24세 이하 청소년’ 378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양육 청소년 한부모와 입양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 진로 및 직업훈련(교육), 취업 및 자립여건, 자녀양육, 주거 등 생활실태와 지원제도 이용 실태 및 만족도 등을 분석하였다.

2) 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 보장 실태 및 여건 분석(총괄보고서)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자녀 양육과 관련한 자기결정권(자유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평등권), 사회보장수급권(사회권)에 대한 전반적 인식과 기본권 보장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청소년 한부모의 주요 타자(significant others)인 일반 중·고교생 청소년, 중·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병행하여 청소년의 임신, 출산, 양육 관련 기본권 보장을 위한 여건을 다면적으로 검토하였다.³⁾

3) 입양 청소년 미혼모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세부보고서)

2012년 8월 개정 「입양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입양 절차가 강화되었고, 2015년부터는 입양기관의 미혼모 시설 운영이 금지되는 등 입양 관련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청소년 미혼모의 입양 결정 요인을 살펴보고 입양숙려제와 입양허가제 등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에 따른 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4) 양육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형개발(세부보고서)

현행 청소년 한부모 대상 서비스 전달 체계는 기초 생활수급자 가구 및 저소득 한부모가구 지원체계와 동일하다. 또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한부모의 상황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기존의 가족지원 중심의 전달체계가 개편될 필요가 있고, 시설 퇴소 이후 재가(在家) 청소년 한부모의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현행 서비스 전달 체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5) 청소년 한부모가족 유형 및 생활주기별 지원 방안 도출(총괄보고서)

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을 토대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른 정책과제를 포괄적으로 제안하였

3) 중·고교생의 경우 전국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층화다단계집락추출법으로 6,182명을 목표로 표본을 추출하여 최종적으로 204개 학교 6,543명(중학생 3,036명, 고등학생 3,507명)의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함. 학부모는 지역별 중학생 및 고등학생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추출법으로 총 510명을 웹조사 방식으로 조사하였음.

다. 양육 청소년 한부모뿐 아니라 입양 미혼모 등 청소년 한부모의 유형과 임신·출산·자녀양육의 생활주기별 주요 이슈를 감안하여 7대 정책과제와 28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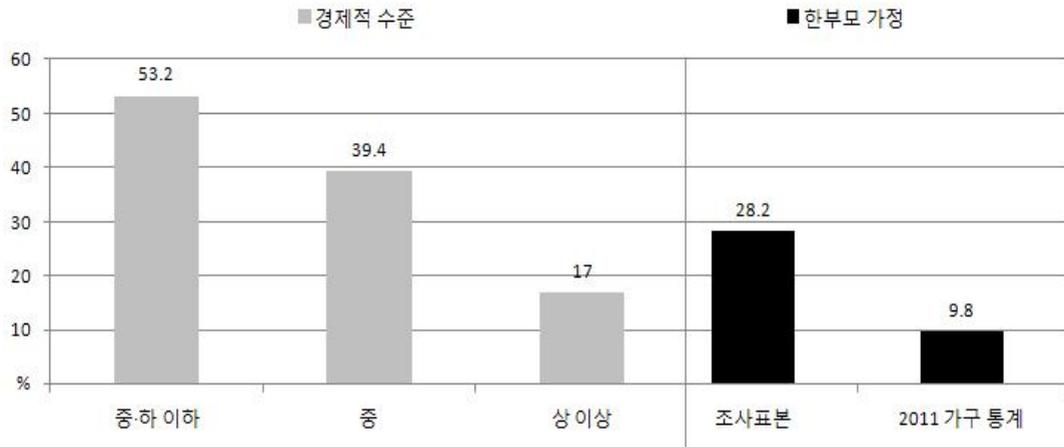
3. 주요 조사결과

1) 청소년 한부모의 생활실태

(1) 성장기 환경과 임신·출산 경험

1차년도 조사에서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청소년기를 보낸 가정환경을 살펴본 결과(n=457) 양친 가정(52.7%)에서 자랐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한부모 가정(28.2%), 조손가정(5.9%)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011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 대비 한부모가족 비율이 9.3%임을 감안하면 본 조사 표본은 3배 이상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원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중하 이하'라는 응답이 53.2%에 달하여 부모의 빈곤과 가족 유형까지 대물림되는 양상이 일부 확인되었다(그림 1). 이는 청소년 한부모 발생의 주요 원인이 계층의 문제일 수 있음을 일부 시사하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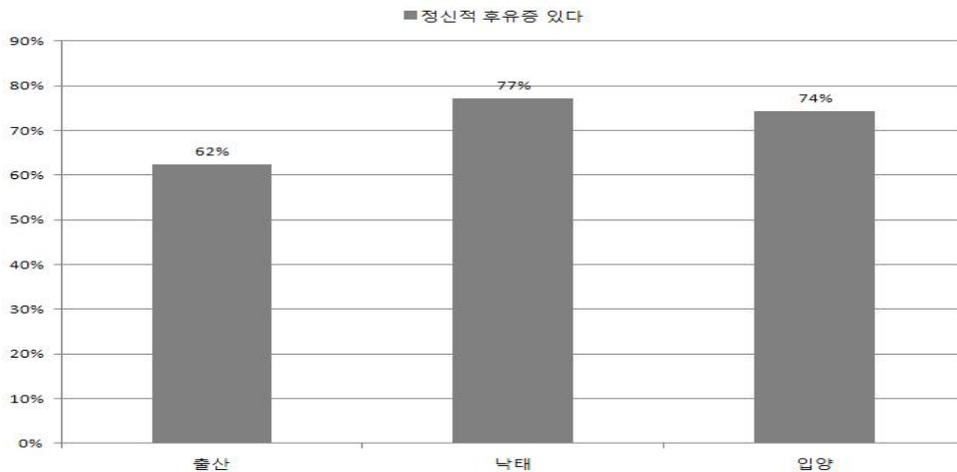
같은 자료에서 출산, 낙태, 입양 후 정신적 후유증이 있다는 응답(중복응답)이 각각 62.4%, 77.1%, 74.3%에 달하였다. 청소년기 출산의 상당수가 원하지 않는 임신, 고위기 상황에서 출산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출산 이후 심리·정서지원뿐 아니라 낙태, 입양에 따른 위기개입(crisis intervention)이 요구된다(표 1, 그림2).



【그림 1】 청소년 한부모의 성장환경

표 1 출산, 낙태, 입양의 정신적 후유증(중복응답)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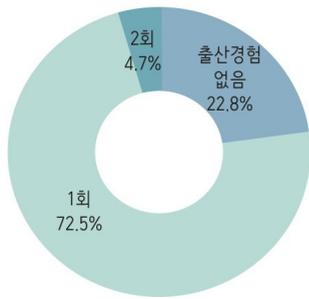
구분	후유증 있다	후유증 없다	계
출산	212(62.4)	128(37.6)	340(100.0)
낙태	64(77.1)	19(22.9)	83(100.0)
입양	113(74.3)	39(25.7)	152(100.0)



【그림 2】 출산, 낙태, 입양의 정신적 후유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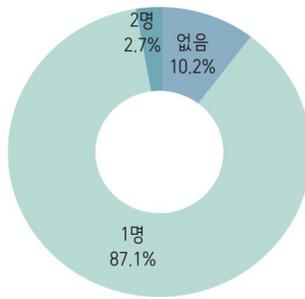
1차년에 이어 2차년도 조사에서 청소년 한부모의 출산 경험, 자녀 양육 현황을 살펴본 결과 출산 경험이 2회에 달하거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가 발견되어 청소년의 임신, 출산은

반복되는 사안임을 알 수 있다(그림 3, 그림 4, 그림 5). 또한 과거에 자녀를 입양 보낸 경험이 있거나 현재 입양을 고려중이라는 응답이 조사 대상자의 28%에 달하였다. 불안정한 양육 여건은 결국 입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양육 여건을 개선하고 입양, 양육이 연장선상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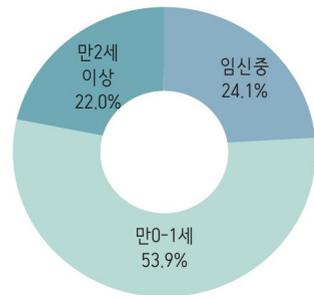
* 주: 1) n=378

【그림 3】 출산경험 및 횟수



* 주: 1) n=295

【그림 4】 양육 중인 자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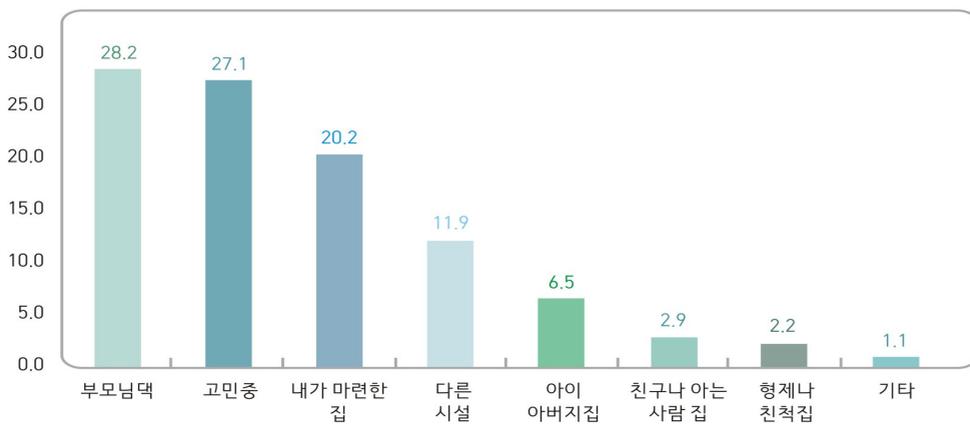


* 주: 1) n=345

【그림 5】 자녀의 연령

(2) 주거 및 경제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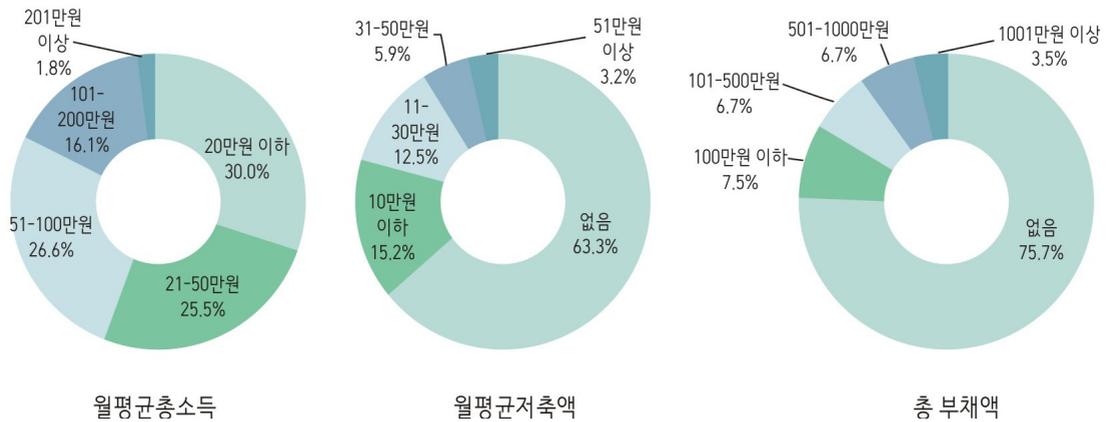
2차년도 조사에서 현재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n=278)를 대상으로 퇴소 이후 어디에서 거주할 계획인지를 파악한 결과 부모님택(28.2%)으로 가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아직 주거지를 정하지 못해 고민 중(27.1%)이라는 응답도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특히 다른 시설에 입소하겠다는 응답이 10명 중 1명에 달하였다(그림 6).



* 주: 1) n=277

【그림 6】 (시설 생활인) 시설 퇴소 후 거주 계획

경제상황을 보면 청소년 한부모 2명 중 1명은 월평균 총 수입이 50만 원 미만이며, 10명 중 6명은 저축이 전혀 없고, 현재 부채가 1천만원을 초과한다는 응답도 3.5%에 달하였다. 이로 인해 생활비를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10명 중 6명에 달했고(64.2%), 아르바이트 포함한 근로소득으로 충당하는 경우(17.6%) 보다 부모 혹은 가족의 지원을 받는다는 응답비율(40.1%)이 더 높았다(그림 7). 즉, 청소년 한부모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자립지원이 없을 경우 이후 만성 빈곤 상황에 놓일 수 있고 이는 미래사회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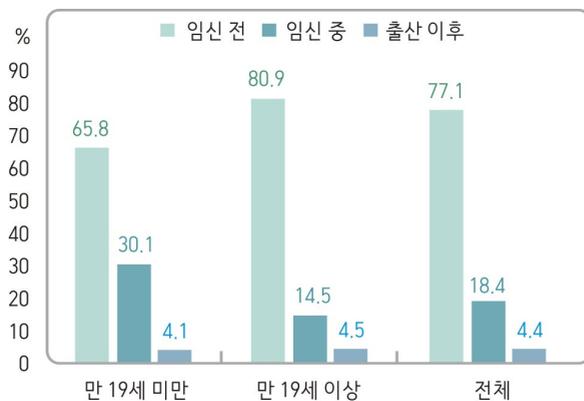
* 주: 1) 월평균총소득 n=353, 2) 월평균저축액 n=376, 3) 총 부채액 n=375

【그림 7】 경제적 여건

반면 현재 학업을 중단한 상태라고 응답한 경우(n=220) 10명 중 7명(77.1%)은 임신하기 전에 이미 학업을 중단한 상태였고, 임신 중 중단(18.4%), 출산 후 중단(4.4%)이 그 뒤를 이었다. 조사대상자 중 최종학력이 중졸 이하(40.7%)인 경우가 10명 중 4명에 달하였고 현재 어떤 형태로든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는 22%에 불과하였다. 학업중단 직전 학업 유형을 보면 일반 정규학교(78.9%)에 다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학교를 다니다가 학업을 중단하고 임신을 경험하는 경로가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8, 그림9). 이는 학교가 원하지 않는 임신이라는 위기 상황으로부터 여자 청소년을 보호하는 안전망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며, 동시에 임신 중 학업중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학생 미혼모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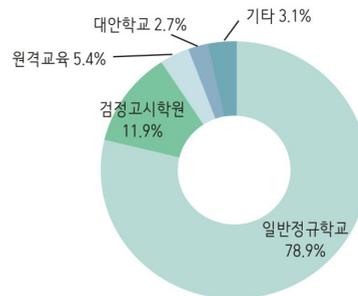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했다고 응답한 경우(n=58) 임신 사실이 주위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스스로 그만뒀다(39.7%), 아이를 돌보기 위해 학업을 중단했다(25.9%)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아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양육 청소년 한부모는 자녀 양육 부담이 학업중단의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경제적 지원 확대, 학업과 양육 병행을 위한 학생 미혼모 대안학교 설치, (미혼모 시설에) 교사를 파견하여 정규학교와 같은 학력 인정, 출산 전후 휴학제도 도입 등의 요구도를 보였다. 특히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준비 수준 및 자립 성공에는 심리·정서적 요인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중단자 가운데 학업 지속 방법을 모른다, 학업 지속 의사가 없다, 고민 중이라는 응답이 각각 10명 중 2명에 달하는 것을 감안할 때 학업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과 동시에 진로상담, 심리·정서 상담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주: 1) 만 19세 미만 n=73, 만 19세 이상 n=220
2) $\chi^2=8.886^*$, df.=2

【그림 8】 학업 중단 시기



* 주: 1) n=294

【그림 9】 학업중단 직전 학업 유형

(4) 근로활동

2차년 조사 표본에서 청소년 한부모 10명 중 8명 이상(86.8%)이 근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 근로활동 여부는 자녀 연령, 시설 거주 여부, 최종 학력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시설 생활인 보다 재가(在家) 대상자, 청소년 한부모의 나이가 많을수록(만 19세 이상) 근로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한부모 가운데 고용형태가 정규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0명 중 4명 정도(44.0%)였다. 구직 시 고려하는 요소는 급여수준, 고용의 안정성, 일 가정 양립 가능성, 출퇴근 거리 순이었고, 구직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근무조건이 맞지 않거나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청소년 한부모의

근로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한부모 친화 직종 개발과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 수혜 및 만족도

청소년 한부모(n=378)를 대상으로 출산지원 제도(출산 전 진료비, 산모신생아 도우미, 영양플러스), 양육지원제도(영유아보육료, 양육수당, 심리상담, 친자 검사비, 출산 및 양육 시 위기지원, 아이돌보미), 취약가족지원 제도(저소득 한부모가구 복지자금 대여,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제도(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고교생 교육비, 자립촉진 수당, 자산 형성 계좌), 위기청소년지원제도(헬프콜청소년전화1388,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 클래스(센터), 두드림 사업)의 인지율, 수혜율, 만족도를 비교하였다.

인지율과 수혜율은 양육지원 제도(61%, 45.6%), 출산지원 제도(48.1%, 39.3%)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취약가족지원 제도의 경우 자격조건으로 인해 제도 인지율(45.6%)과 수혜율(18.6%)의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상당수가 학업중단, 빈곤 등 고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위기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위기청소년지원 제도의 인지율(27.3%)과 수혜율(35.6%)이 가장 낮았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역시 인지율(42.8%)과 수혜율(29.8%)이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지원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3) 청소년의 임신, 출산에 대한 청소년 및 학부모의 인식

조사대상 중·고교생 가운데 ‘주변에서 임신 또는 출산으로 고민하는 친구(학생)를 만난 적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다’는 응답(93.9%)이 대다수였다. 반면 ‘있다’는 응답률은 6.1%로, 교급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 일반계고보다 특성화고의 경우 임신, 출산으로 고민하는 친구를 만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교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비교한 결과 임신과 양육에 있어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먼저 학생(중·고교생) 임신에 대한 느낌을 각각 질문한 결과 학부모는 거부감이 든다(63.9%)는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청소년은 동정심이 들고 불쌍하다(53%)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반면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느낌을 각각 질문한

결과 학부모는 동정심이 들고 불쌍하다(65.1%), 책임감이 있다(64.7%)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학생 역시 책임감이 있다(62.5%), 가능한 일이고 그럴수도 있겠다(54.9%)로 긍정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학부모와 일반 중·고교생 모두 청소년의 임신과 양육에 있어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임신보다 미혼모에 대한 부정응답(거부감, 운이 나쁘다, 비행청소년) 비율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학생 임신부/학생 미혼모가 나와 같은 학교에 다녀도 상관없다(학부모의 경우 내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녀도 상관없다)’는 질문에 대하여 ‘상관없다’는 긍정 응답률은 학생 임신부보다 학생 미혼모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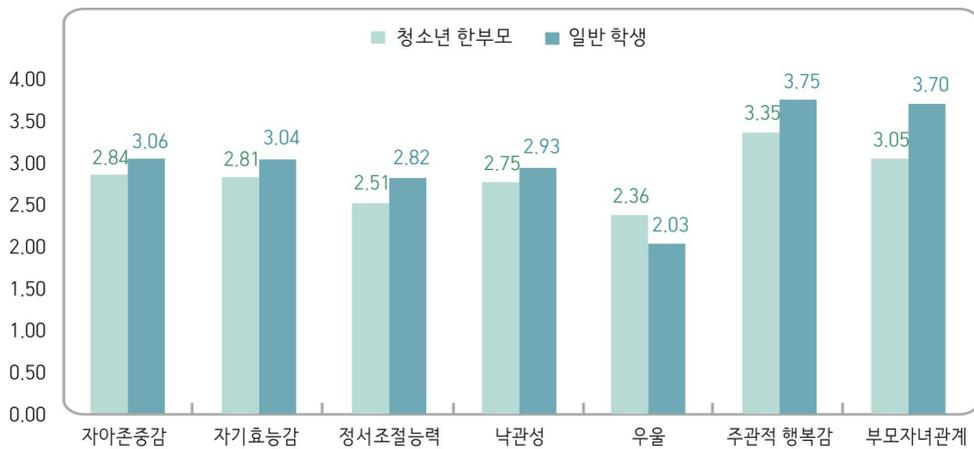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미혼모는 차별을 받는다’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학부모, 청소년 한부모, 중·고교생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자녀를 키울 여건이 되지 못하면 입양 보내는 것이 낫다’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청소년 한부모, 중·고교생, 학부모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대 간의 차이를 일부 확인할 수 있는 답변으로, 기성세대인 학부모는 혼외 출산은 차별 대상이라고 지각하는 반면 자녀 양육과 부양에 대한 책임감 역시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의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는 정책적 노력과 양육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 보장 및 사회적 지원 확대는 세대에 관계없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사안임을 의미한다.

4) 청소년 한부모와 일반 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위기 경험 비교

청소년 한부모와 중·고교생의 정신건강과 위기 경험을 일부 비교하였다. 먼저 청소년 한부모는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서조절능력, 낙관성, 주관적 행복감, 부모자녀관계 등 6가지 항목에서 또래 중·고교생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한 반면 우울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한부모의 정신건강이 또래에 비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이들은 양육지원, 자립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기 이전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정신건강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는 취약·위기청소년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그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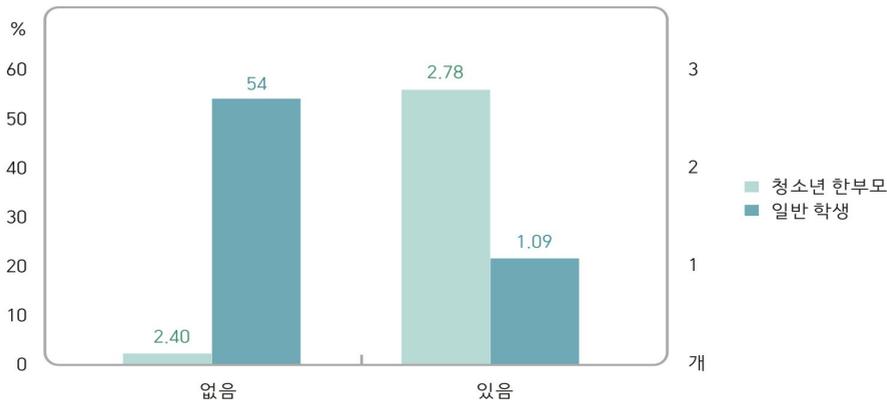
청소년 한부모의 취약성은 위기 경험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청소년 한부모와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학업중단/자퇴 고민, 학교폭력(피·가해 경험), 가정폭력(아동학대 포함), 가출, 자살시도, 부모의 이혼·별거·사별, 자살 생각, 인터넷중독, 청소년쉼터 입소 등 총 9개 ‘상황적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중·고교생 가운데 9개 상황적 위기를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다는 응답은 절반(54%) 이상인 반면 청소년 한부모는 2.4%에 불과하였다. 또한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중·고교생은 평균 1.09개의 위기를 경험한 반면 청소년 한부모는 평균 2.78개의 위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1). 특히 청소년 한부모 가운데 성폭력(성매매 포함)을 경험한 비율도 전체 응답자의 11.1%에 달하였다. 이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은 양육지원을 포함한 사후적인 가족정책 내에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청소년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예방과 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때 궁극적으로 정책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 주: 1)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서조절능력, 낙관성, 주관적 행복감은 $p < .001$ 에서 유의함.
2) 우울은 $p < .01$ 에서 유의함.

【그림 10】 청소년 한부모와 일반 청소년의 정신건강 비교



【그림 11】 청소년 한부모와 일반 청소년의 상황적 위기 경험 비교

4. 정책제언

이 연구에서 정책 대상인 청소년 한부모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뿐만 아니라 임신 및 출산 경험이 있는 청소년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가 지원하여 ‘원 가정을 보호’하지는 것이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의 궁극적인 목적 중 하나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즉, 낙태와 입양을 통해 출산과 양육을 포기했다더라도 이들은 임신과 출산 경험을 통해 짧게나마 부모 됨을 경험한 바 있고, 임신과 출산은 반복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임신, 출산, 양육 지원은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사실상 청소년기의 원치 않는 임신은 예방정책의 실패를 의미하며,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사회문화적 환경과 인식, 관련 법률 및 제도적 여건 등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이슈에서 청소년의 기본권을 우선 보호하고 이들이 자립과 자녀 양육이라는 청소년기, 성인기 발달 과업을 성공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정과제에 따른 주요 정책 현안을 중심으로 7대 추진과제와 27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추진과제별 세부 정책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책과제	정책과제 추진 기반
1.취약가족의 기능회복 및 자립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한부모가족 복지지원 체계 정비 ○ 지역사회 통합서비스 지원기관 확충 ○ 취약가족의 가족기능 회복 및 자립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 법정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확대 ○ 모바일 미디어를 통한 제도 접근성 강화
2.위기가족 지원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비 지급 이행 모니터링 ○ 제한적 양육비 선지급 제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법제 정비 ○ 이행 강제기관 설치
3.취약.위기 청소년 지원 인프라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임의규정 개선 ○ 위기청소년과 가족지원 인프라 간 연계 ○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른 낙태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피임실천을 성과 관리 ○ 성평등 피임교육 및 피임접근성 강화
4.임신.출산.양육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모 전담 상담창구 설치 ○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기능 보강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연계 기능 강화 ○ 청소년 한부모 공동주거시설 확보 ○ 미성년 청소년 한부모 가정위탁제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가족 기능회복 및 기능보강 예산확보 ○ 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 지방자치단체 평가지표 반영
5.임양 미혼모 인권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양 미혼모 상담 및 지원 마련 ○ 보호동의와 입양동의 분리 운영 ○ 베이비 박스 국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보호 강화 ○ 가정위탁 지원제도 개선
6.양육 및 자립지원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 ○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계좌 부활 ○ 맞춤형 생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서비스 확대
7. 학습권 보장 및 취업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석 대체 인정 ○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확대 및 운영 개선 ○ 학습권 보장 매뉴얼 개발.보급 ○ 학업중단속려제 전면 시행 및 운영 개선 ○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내 기구 설치 ○ 미혼모 대안학교(기숙형 국립 대안학교) 설치 ○ 검정고시학습비 지원 제도 개선 ○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성평등교육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교사 배치 확대 ○ 교육청, 학교 평가 시 학습권 보장 관련 지표 반영 ○ 교사 연수 시 학생 및 소수자 인권 보호 내용 포함

【그림 12】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및 추진 기반

1 취약가족의 기능회복 및 자립 강화: 국정과제 “건강한 가정 만들기”

- 청소년 한부모를 포함한 취약가족에 대한 통합사례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주민센터를 복지허브 화하고 미혼모 부자 거점기관 역시 연계를 포함한 거점기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및 기능을 보장하는 등 청소년 한부모 복지 지원 체계를 정비해야 함.
- 빈곤과 가구 형태(한부모)까지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통합서비스 지원 기관을 확충하여 취약가족의 가족기능 회복 및 자립지원을 강화해야 함.
- 모바일 미디어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보급하고 문자, 채팅 등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상담 방법을 다양화하여 대상자 조기 발굴, 원스톱 지원, 초기상담 및 대응을 강화해야 함.

2 위기가족 지원 강화: 국정과제 “건강한 가정 만들기”

- 청소년 한부모 10명 중 약 8명은 상대 남성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양육비 이행기관을 설치하고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 정보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강제수단 및 행정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양육비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함.
- 본 표본에서 청소년 한부모의 상대 남성 75%가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나타나 사실상 양육비 지급능력이 없는 상황임.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제한적 선지급 제도’를 신설하여야 함. 이 경우 국가는 상대 남성의 근로소득이 발생했을 때 원천징수하거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정도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3 취약·위기 청소년 지원 인프라 확대 국정과제 “청소년 역량 개발 및 건강한 성장 지원”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특별지원청소년 지원에 대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선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와 입양 청소년 미혼모를 포함한 임신·출산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 대한 특별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함.
- 현행 CYS-Net 필수 연계기관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한 건강가정 지원 센터 등을 포함하여야 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근거로 할 때 동거가족은 사실혼 관계에 있어 사실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이들의 취약성으로 인해 일선 기관에서 묵인하고 지원하는 실정임. 따라서 동거가족의 경우 청소년 한부모에 한해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참여를 조건으로 양육지원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는 등 가족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연계를 통한 섬세한 접근이 요구됨.
- 낙태의 범죄화에 있어 가장 큰 피해자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 임신부임. 청소년의 건강권을 실현하고 성적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을 존중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른 낙태를 허용하고 보건교육을 강화하는 등 현행 종교단체 중심의 낙태 예방 노력에서 벗어나 정책적인 지원과 개입이 필요함.
- 원하지 않는 임신 예방과 관련하여 성평등 피임교육과 피임접근성 강화, 사전·사후 피임에 대한 접근성 제고가 요구되며 청소년 낙태 규모를 추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 등에 포함된 청소년 피임 실천율을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국가가 관리해야 함.

4**임신·출산·양육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국정과제 “행복한 임신과 출산”**

- 임신, 출산과 같은 사안에서 초기 상담과 대응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음. 청소년 전화 헬프 콜 1388, 보건복지 콜센터 129, 관련 시설 등으로 상담문의가 분산되어 서비스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함. 한부모가족 전담 전화상담을 설치하고 상담인력 중 미혼모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초기 상담을 강화해야 함.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미혼모 부자 거점기관, 공공복지 전달 체계 간의 연계가 미흡하여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대상자 누락, 분절 등의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거주지 변동이 잦은 청소년 한부모의 특성을 고려하고 자녀의 성장 등 생활주기에 따른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함. 특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경우 대상자 입소 시 퇴소 이후 개별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시설의 기능 확대가 필요함.
- 시설 입소 청소년 한부모 10명 중 2명만이 퇴소 후 원가정 복귀 계획을 가지고 있어 퇴소 이후 주거지원을 강화해야 함. 2013년 6월 현재 한부모가구에 공급된 임대주택 15,836호 가운데 청소년 한부모가구에 공급된 주택은 28호에 불과함. 보금자리 매입 임대주택 원룸 공급 시 대학생에 준하여 청소년 한부모에 우선 공급, 3~4세대 청소년 한부모가구 대상 공동주거시설 확대 등이 요구됨. 장기적으로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확보, 임대료 지원, 주거급여 개편에 따른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추진 필요
- ‘아동이 아동을 양육하는’ 18세 이하 미성년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이전에 「아동복지법」에 준한 보호가 필요함. 청소년 한부모 역시 보호 대상이므로 자녀와 함께 가정위탁할 경우 ‘원가정 보호’와 자립역량 재고에 기여함.

5**입양 미혼모 인권 보호: 국정과제 “아동인권 보호 강화 및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 청소년의 임신, 출산은 반복되는 사안이며 입양 후 대다수가 후유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재 입양에 있어 친생모에 대한 지원은 전무함. 2015년 이후 입양기관의 미혼모시설 운영이 금지됨에 따라 이들 시설에서 입양인 사후관리 업무와 입양 미혼모에 대한 상담과 지원 연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대안이 강구되어야 함.
- 입양숙려 기간 중 아동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 위탁가정 등에 대리보호하도록 하고 대리보호 동의를 입양 동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입양 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요구됨. 단, 보호동의 의 경우에도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 대상으로 산후조리 및 상담지

원을 받을 수 있고 자녀와의 만남 등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 시 보호 동의와 입양 동의를 분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베이비 박스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요보호 아동 및 미혼모 보호체계 전반을 재검토하여야 함. 베이비 박스는 아동의 생명권 보호라는 순기능이 있으나 현행 운영 방식은 관리 감독의 부재로 아동 인권과 관련한 부차적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현행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일부 사항, 전부 사항이라는 용어를 일반 사항, 기초사항으로 개선하고, 기록의 열람 범위와 청구가 가능한 범위를 제한하여야 함. 친양자 관계 등록부 상의 친생모에 대한 정보 역시 아동의 뿌리를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관리하되 본인(친생모)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입양인이 친모의 인적 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됨.

6 양육 및 자립 지원 강화: 국정과제 ‘인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양육과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 3개월 미만 영아에 대한 돌봄 지원을 허용하고, 시간제한 등 이용원칙에 예외 적용하는 등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이 요구됨. 또한 영아종일제 지원, 시간제 이용대상 확대를 위해 「아동돌봄지원법」을 개정하여야 함.
- 청소년 한부모 자산 형성 계좌 운영을 통해 자립을 위한 종잣돈(seed money) 마련을 지원함. 기초 생활보호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년 한부모가 생계비 및 근로소득 일부를 저축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24세까지 예치하도록 하고 이후 현행 희망키움통장, 내일 키움 통장과 연계 운영하여 성인기 이후 자립을 지원함.
- 청소년 한부모의 원 가족이 이들을 부양할 경우에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여야 함. 특히 청소년 한부모가 부양의무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자녀가 만 3세에 달할 때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제공하고 교육 및 자활급여를 조건부로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지원함. 프랑스는 2009년부터 활동적 연대수당을 통해 원가정에 거주하면서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25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도 예외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여 최저생활 보장과 근로 및 취업 촉진을 유도함.
- 양육비 지원을 현실화해야 함. 청소년 한부모에게 월 15만 원의 아동 양육비기 지급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12세 미만 아동에게 월 7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급함. 위탁가정에

월 12만 원, 입양가정에 월 15만 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됨을 감안할 때 원가정 보호 차원에서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를 증액할 필요가 있음.

7 학습권 보장 및 자립 지원 강화: 국정교제 “청소년 역량 개발 및 건강한 성장 지원”

- 출석 대체를 인정하여야 함. 재학 중인 청소년이 산전 진료 및 산후 건강관리를 이유로 정규 수업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 출석을 대체하여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함. 관련하여 「방송 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과 동법 시행규칙을 준용할 수 있음.
-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한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설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평가 시 설치 여부와 설치 개소수를 평가 항목에 반영하는 적극적 조치가 요구됨. 또한 원격학교에 20일 이상 출석 의무하도록 하는 규정은 오히려 수업 공백을 유발하여 미혼모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조치이므로 개선하여야 함.
- 학생 청소년의 임신, 출산과 관련하여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학교규칙 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함과 동시에 임신, 출산 사안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일선 학교에 보급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과 컨설팅 기능을 마련하여야 함.
- 학업중단 숙려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강화하여야 함. 임신, 출산은 학업 수행에 있어 성별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므로 숙려 기간 중 심리 및 진로상담, 외부와의 자원 연계, 학업중단 이후 학업 지속 방법 안내 전반에서 성인 지적 접근이 요구됨.
- 최저생계비 150%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연 154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검정고시학습비 지원 제도의 운용 방식을 개선하여야 함. 현행 제도는 일부 학원의 상업적 접근으로 예산 낭비의 소지도 배제하기 어려움. 또한 평생학습 차원에서 지원 대상을 청소년 한부모가 아닌 전체 한부모로 확대하고 시설 입소자의 경우 종사자의 관리 하에 멘토링, 튜터링 등 개별적 학습지도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 시기와 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연령에 따른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여야 함.
- 여성 청소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의 일환으로 「성평등교육법」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대만 사례 참조).
- 일선 학교의 학생 임신, 출산과 관련한 예방적 접근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의 보건교사 배치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함.

발표 2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윤 철 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 지 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1. 연구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1년 이후 감소하던 학업중단율이 2007년부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학업중단자의 절반 가까이가 전문고등학교 학생이었으나 2004년부터는 중학생과 일반 고등학교 학생의 구성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여 2010년 현재 중학생과 일반고생은 각각 전체 학업중단자의 31.3%와 34.7%를 차지하고 있다. 왜 학업중단이 늘어날까? 중학교와 일반 고등학교에서 왜 학업중단이 늘어나는 것일까? 학업중단 사유는 무엇이며, 학업중단 이후 이들은 어떤 삶의 행로를 거치게 되는 것일까?

학업중단 후 청소년들의 삶의 경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 길이 없다. 학교를 떠난 후 교정 시설에서 발견되기 전까지 공공부문에서는 그들의 삶의 흔적을 포착할 수 없다. 비행기의 블랙박스처럼 학업중단 이후 청소년들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사회적으로 헤독되지 않은 상태이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이 사회의 소수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그들에게 사회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삶의 행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진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오기는 했다. 그러나 연구대상자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10~20명의 학업중단자를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나 학업중단자들이 있는 시설과 기관을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조사대상자의 선정부터 편향적이었기 때문에 학업중단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웠으며, 일회성 횡단 조사이기에 학업중단 이후 청소년들이 어떠한 행로를 경험하고 있는지도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려웠다.

학업중단자의 삶은 정형화되기 어려운 여러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므로, 학교 중단 시점부터 추적조사를 하는 중단연구가 매우 필요하다.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시기에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들이 이후 삶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며 사회에 적응하고 일탈하게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20대 초, 중반에 이를 때까지 장기간의 추적조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학업중단자의 극심한 유동성으로 현실적으로 조사 패널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 학업중단 초기, 3개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중단 조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가 갖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은 어떤 생활과 경험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가치관과 의식을 가지고 변화하고 있는가?

둘째,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경험은 어떤 경로를 거치며, 이를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가?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별 분포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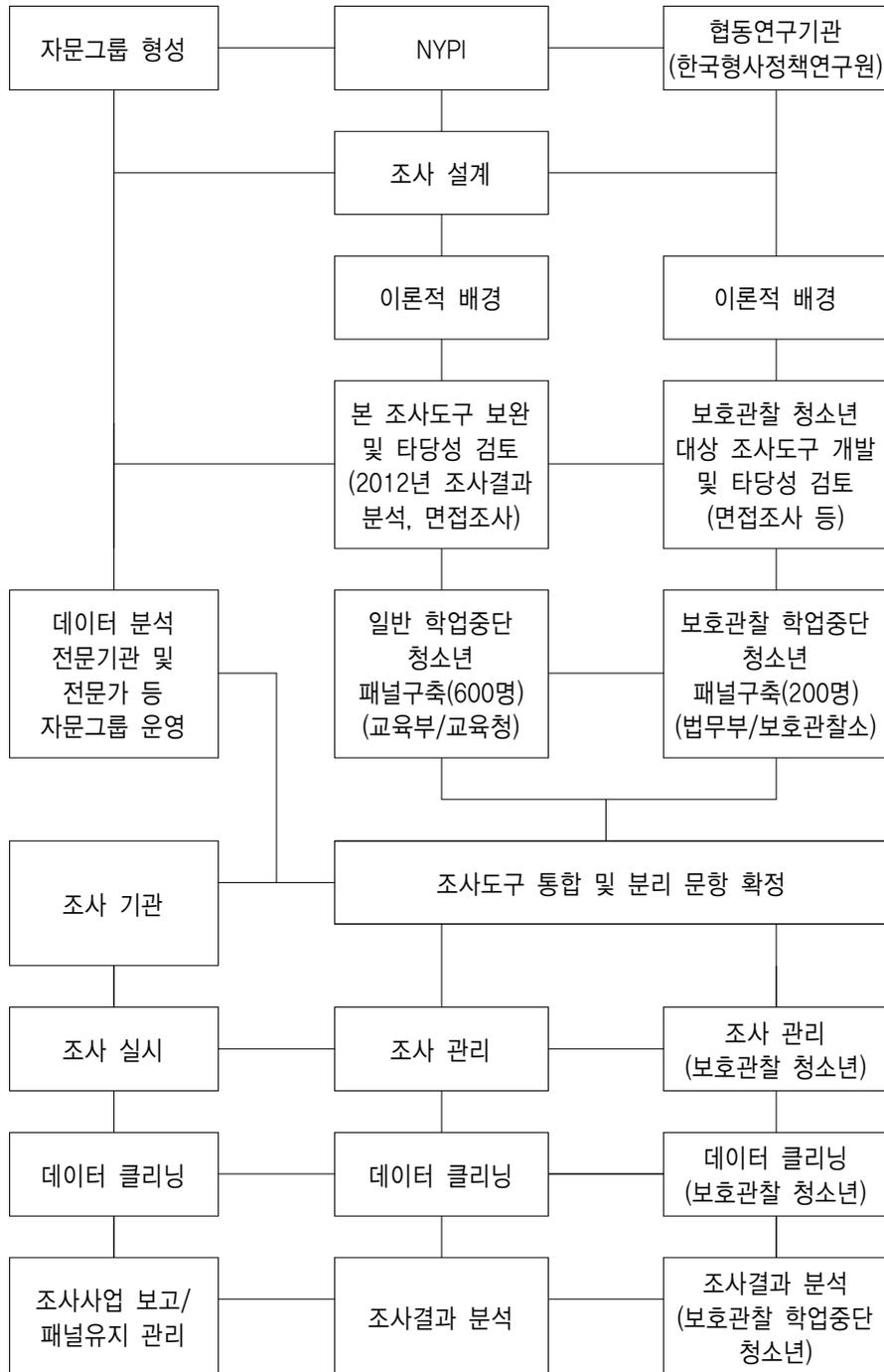
셋째,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로, 이행과정 (사회 적응과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학업중단 청소년의 이행과정을 예측할 수 있는가?

넷째,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에 맞는 정책적 지원방안은 무엇인가?

2) 연구방법 및 연구추진체계

주요 연구 방법은 양적 조사로 정규 중고등학교 학령기에 해당하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본 패널로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776명, 비교집단 패널로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220명, 총 996명의 학업중단 청소년을 구축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향후 2015년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 연구 1차 연도인 본 보고서의 조사 결과는 1차 데이터 처리가 종료된 조사 응답자인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474명,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190명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한다.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과 한국형사정책 연구원의 협동연구과제로 수행되었으며, 실사는 한국리서치가 담당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은 교육부, 시도교육청, 한국상담복지센터 등의 협조 하에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패널 구축을 담당하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법무부의 협조를 얻어 보호관찰 청소년 패널 구축을 담당하였다.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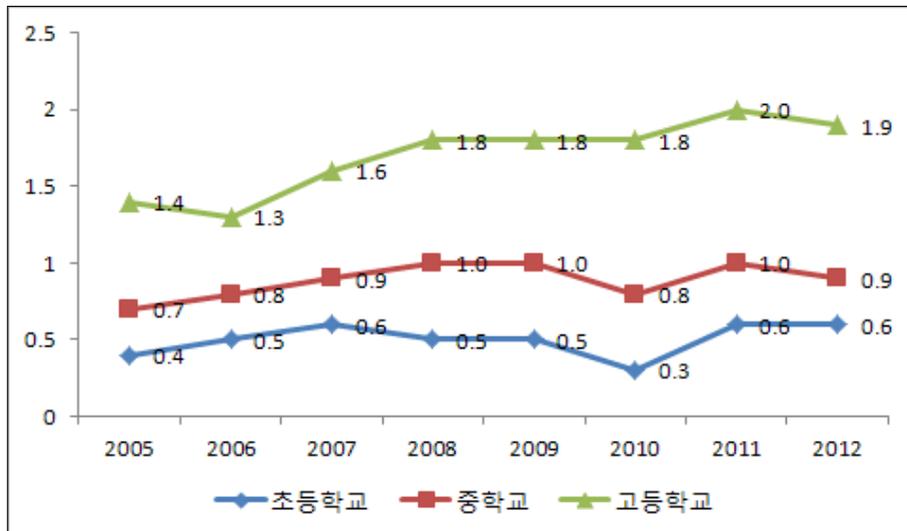
3) 조사도구

조사도구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였으며, 개인 명부 대상자는 일대일 대면면접, 기관 접촉을 통한 조사대상자는 자기기입식 조사방법을 활용하였다. 조사도구는 2012년에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이 개발한 것을 검토, 수정, 보완하여 활용하였으며,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집단 간 특성과 학업중단 이후 경로 비교를 위해 동일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또한 학생 청소년 집단과의 비교를 위해 본 연구의 조사 문항은 일반 학생에 관한 데이터가 축적된 선행연구의 조사 문항과 가능한 일치시키도록 하였다.

2. 주요결과

1) 학업중단 현황

(1) 학업중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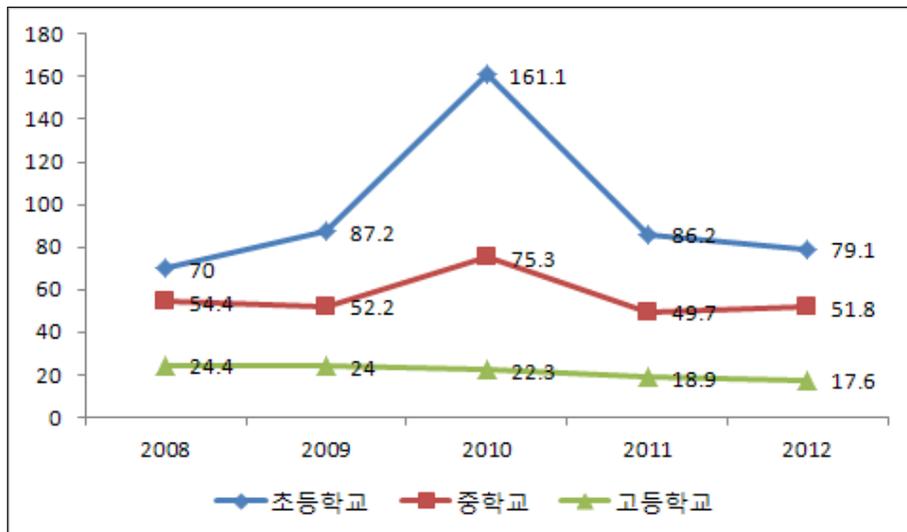


【그림 2-1】 학교급별 학업중단율 변화(2005~2012) (단위: %)

[그림 2-1]에서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초등학교보다 중학교,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서 학업중단율이 높으며, 고등학교 시기의 학업중단율이 중학교 시기의 2배 이상 높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2005년 이후 최근 8개년 간 초·중·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음이다. 그중 고등학교의 증가폭이 가장 크며, 초·중학교는 2010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 학업중단자 복귀현황

최근 5개년 간(2008~2012) 연도별 학업중단자의 학교 복귀현황을 보면([그림 2-2] 참조) 먼저, 학교급별로 초등학교는 70~80% 이상의 복귀율을, 중학교는 50% 수준, 고등학교에서는 18% 수준의 복귀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령기 순으로 복귀율이 낮아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연도별 복귀율의 변화에서 2010년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 복귀율은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이는 통계 산출방식의 변화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며 최근 5개년 간 큰 변화가 없었다. 2008년에 비해 2012년의 초·중학교 시기 복귀율은 다소 하락하고, 고등학교 시기의 복귀율은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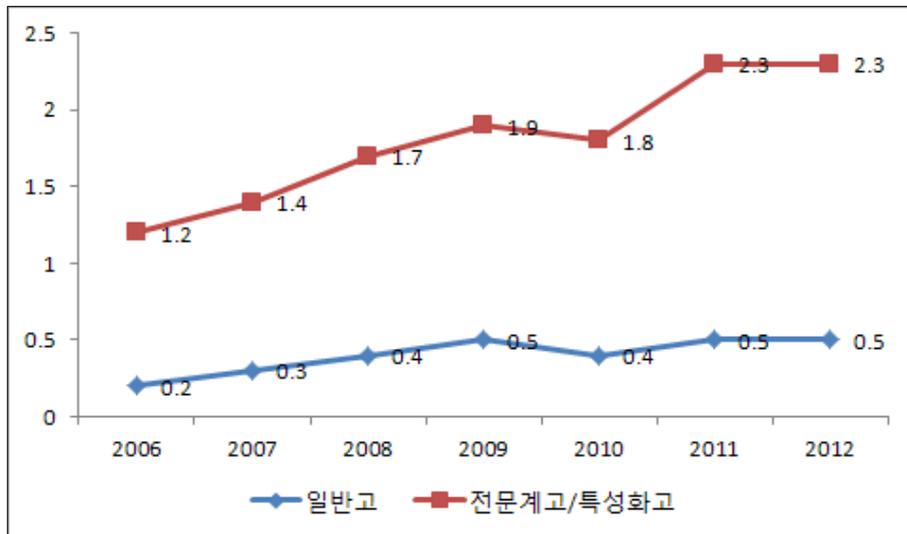


【그림 2-2】 학교급별 학교복귀율 변화(2008~2012) (단위: %)

(3) 학업중단 사유의 변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학업중단 사유를 유예 및 면제로만 구분하여 구체적인 중단 사유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학업중단 사유를 질병, 부적응, 품행, 가사, 기타로 구분하였다. 세부 사유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부적응으로 2012년 현재 일반 고등학교 7,668명(0.5%), 특성화 고등학교 7,805명(2.3%)이 이러한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고 있다.

[그림 2-3]은 부적응을 사유로 한 고등학교의 연도별 학업중단율을 나타낸 것이다. 일반고에 비해 전문계고/특성화고 학생이 부적응을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이 더 높다. 두 집단 모두 2006년 이후 대체로 부적응을 사유로 한 학업중단이 증가해왔으며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부적응을 사유로 한 학업중단율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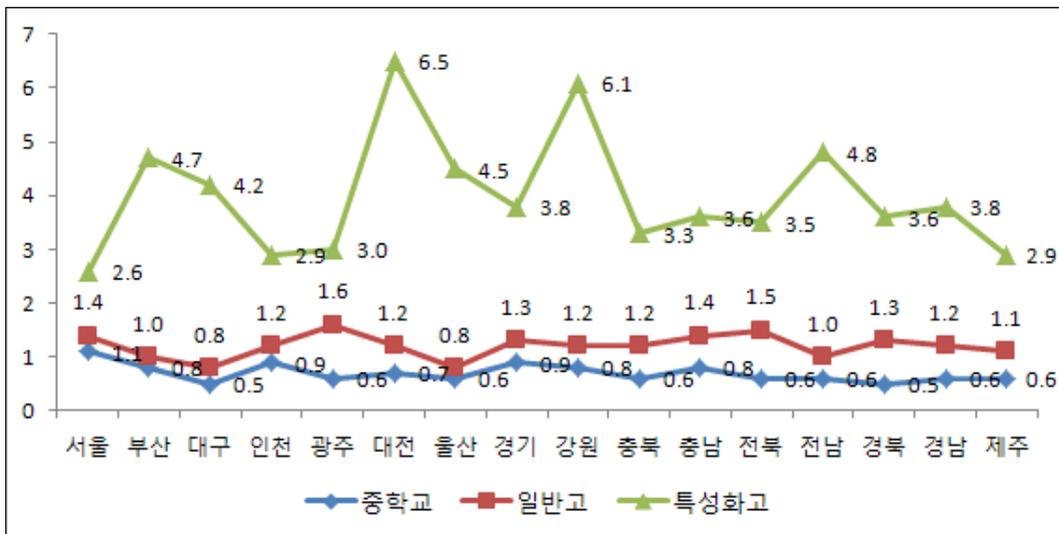
【그림 2-3】 연도별 고등학교 부적응 사유의 학업중단율 (단위: %)

(4) 시도별 학업중단자 규모 및 학업중단율

[그림 2-4]는 2012년도 시도별·학교급별 학업중단율을 살펴본 것이다. 먼저, 초등학교에서는 서울(0.6%), 경기(0.4%)가 상대적으로 높은 학업중단율을 보이며, 중학교에서도 서울(1.1%), 인천(0.9%), 경기(0.9%) 순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수도권에서 높은 학업중단율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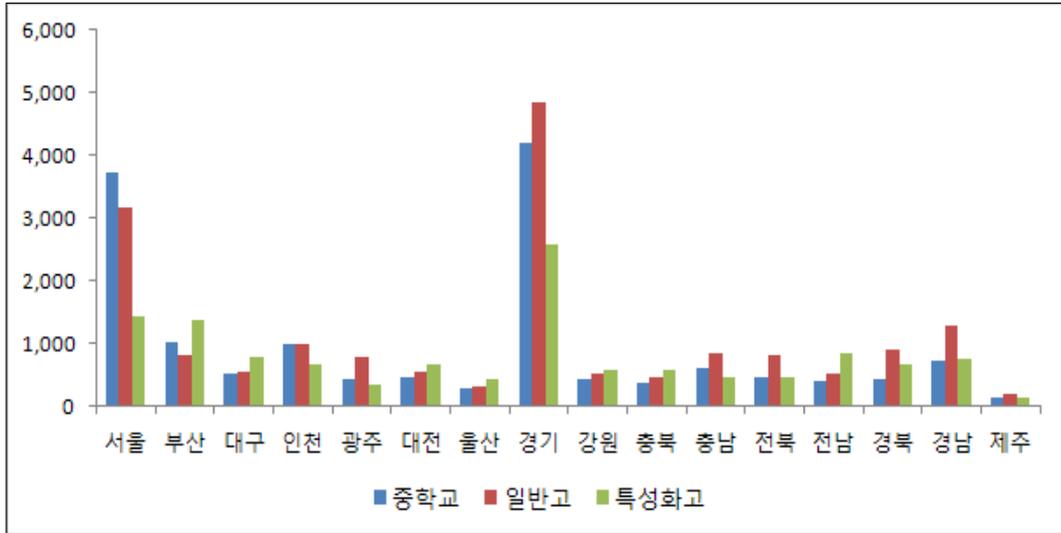
수도권의 학생 인구가 타 지역에 비해 규모가 큼을 감안할 때, 수도권 지역의 의무교육 단계에서 이탈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일반 고등학교는 광주(1.6%), 전북(1.5%), 서울·충남(1.4%) 순으로 학업중단율이 타 지역에 비해 약간 높았으며, 대구·울산지역(0.8%)의 학업중단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대체로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특성화 고등학교는 학업중단율이 높았고, 지역별 차이도 크다. 대전지역의 학업중단율이 6.5%, 강원이 6.1%로 가장 높았고, 서울(2.6%), 인천·제주(2.9%), 광주(3.0%)는 비교적 낮았다. 특성화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의 지역 간 격차는 대전, 강원지역의 특성화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이 서울보다 약 3.5% 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난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림 2-4】 지역별 학교급별 학업중단율 (단위: %)

[그림 2-5]의 지역별 학교급별 학업중단자 수로 보면 학생 인구가 많은 서울, 경기지역의 학업중단 인원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5】 지역별 학교급별 학업중단자 수 (단위: 명)

(5) 학령인구 대비 학업중단자 유형별 규모 추정

학업중단자는 매년 발생하고 그 인원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학령인구 중 실제 학업중단 인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학교 제도 밖에서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지 파악하기란 어렵다. 출생인구 중 학령인구와 실제 학생 수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학업중단자의 규모를 산출할 수 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출생인구 대비 초·중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 중 사회적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학업중단 청소년은 총 278,260명으로 추산되었다.

표 2-1 파악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 수(추정)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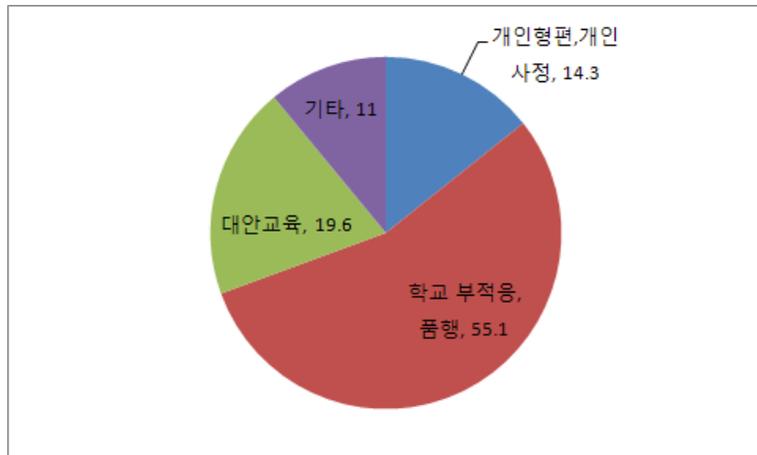
유형	인원	출처
출생인구 중 학령인구(A)	7,126,098	통계청(2013). 인구통계(출생신고 기준/사망자 이민자 제외).
정규학교 학생수(B)	6,721,176	한국교육개발원(2013). 2012학년도 학생현황 교육통계(내부자료).
기타학제 학생수(C)	50,231	한국교육개발원(2013). 2012학년도 학생현황 교육통계(내부자료).
유입학생수(D)	6,914	한국교육개발원(2013). 2012학년도 학생현황 교육통계(내부자료).
파악된 학교 밖 청소년 (E)	83,345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학생복지과 등
미파악자(F)	278,260	$F = B - A - C + D - E$

2) 학업중단 관련 실태

(1) 학업중단 시기 및 이유

학업중단 청소년 실태조사를 보면 주된 학업중단 시기는 고등학교이며(76.8%), 학령별로 볼 때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시 학업중단 경험이 많았다.

학업중단 이유는 개인적 형편이나 대안교육 선호보다는 학교에 가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공부하기 싫다는 학교 요인이 과반수 이상으로 많았으며(1순위 기준), 청소년 학업중단 시 학교의 행정처리 형태는 대부분 자발적 자퇴(79.5%)이다([그림 2-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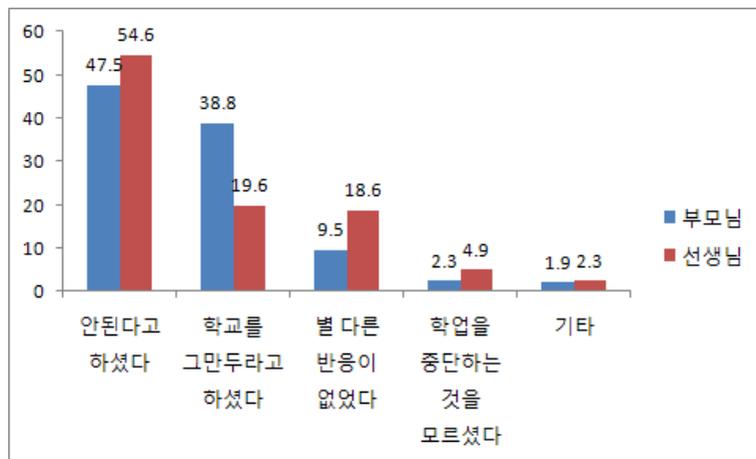
【그림 2-6】 학업중단 이유 (단위: %)

(2) 학교 복귀 경험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교 복귀 경험율은 16.1%로 이들 중 6개월 이내에 학교로 복귀하는 청소년이 약 41%로 나타났다.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이 학교를 졸업하고 싶어서(53.2%) 복교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선생님이나 친구 또는 공부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 것 같거나(36.2%), 배우고 싶은 것을 가르쳐 주는 학교로 옮기려고 또는 김정고시를 쳤기 때문에(25.9%) 복귀 청소년의 75.3%는 이전에 다니던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학업중단 시 고민상담 경험 및 주변인의 반응

학업중단 시 주요 상담 대상은 부모님(79.3%), 친구나 선후배(48.1%), 학교 교사(36.3%)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님과 교사 모두 학업중단에 대한 반대 입장이 많았으나, 찬성률의 경우 부모님이 교사보다 2배 정도 높은 38.8%로 차이를 보이며, 학생의 학업중단 결정 사실을 담당교사가 모르거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응답이 23.5%로 나타나 학업중단 시 교사의 무관심 정도를 살펴볼 수 있었다([그림 2-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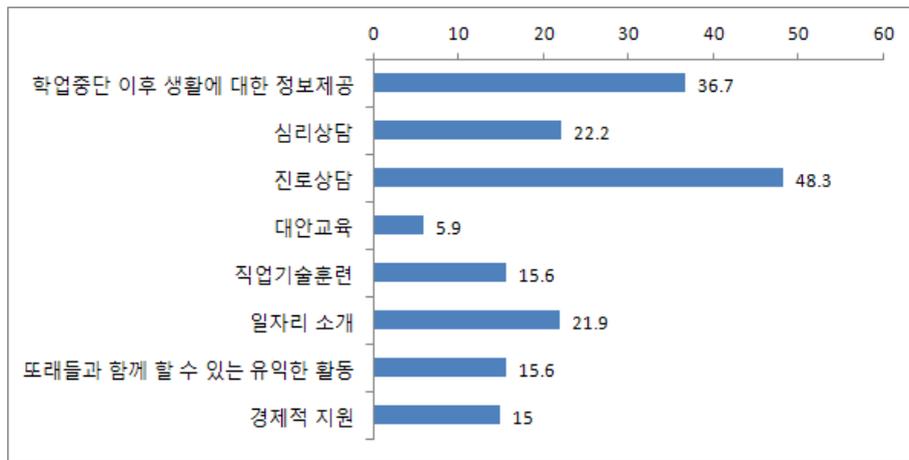


【그림 2-7】 학업중단 시 주변의 태도 (단위: %)

(4) 학업중단 관련 정보제공 및 필요한 도움

학업중단 시 학교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않은 청소년은 절반 이상으로 학교의 정보제공 역할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제공 내용은 검정고시 준비 방법(37.3%), 학교 복학 절차(31%), 청소년시설 혹은 대안교육 기관(각 23% 수준)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중단 숙려제의 경우 정보 습득 경험이 22.2%로 실제로 제도를 이용하고 도움을 받았다고 느끼는 청소년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하다.

한편, 청소년이 학업중단 시 가장 필요로 하는 도움은 진로상담이다([그림 2-8] 참조).



【그림 2-8】 학업중단 시 필요했던 도움 (단위: %)

3) 학업중단 청소년의 개인적·환경적 특성(학생 청소년과의 비교)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학생 청소년과 비교한 결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개인·심리적 특성은 학생 청소년과 별 차이가 없었으며, 게임중독 정도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생 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적 특성을 보면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생 청소년보다 친한 친구 수가 많고, 학습 부적응 수준이 높으며, 학교 규정 위반 경험이 많았는데, 특히, 월 1회 이상의 무단결석이나 수업 불참은 학생과 구별되는 규정 위반사항이다.

4) 학업중단 이후의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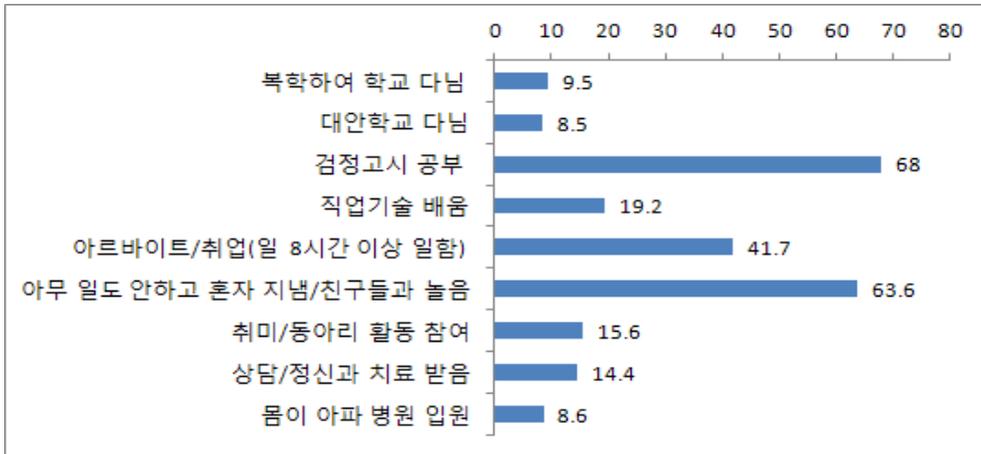
(1) 학업중단 이후 경험과 인식

① 학업중단 이후 경험

학업중단 이후 지난 1년 동안의 생활 경험은 [그림 2-9]와 같으며, 특히 7개월 이상 지속한 생활 경험에서도 검정고시 공부(24.3%)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놀음(21.7%)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업중단 후 PC방이나 가출캠 등 불안정한 주거생활을 경험한 청소년은 약 10%, 보호관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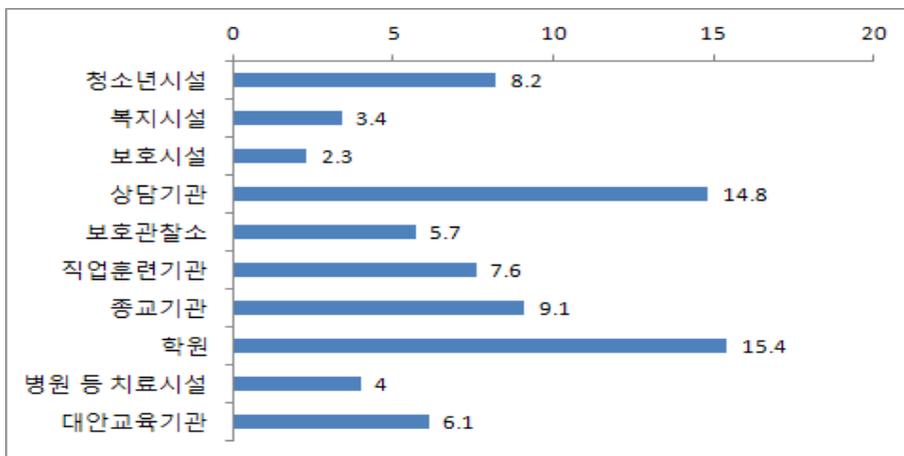
경험자 8.6%, 보호시설 혹은 소년분류심사원 생활 경험자는 2~3% 수준이다.



【그림 2-9】 학업중단 이후 경험 (단위: %)

② 학업중단 이후 사회적 관계

학업중단 후 새로 사귀 친구 없음이 36.3%, 5명 이하가 40.9%로 나타나 학업중단 청소년의 새로운 친구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청소년이 지역사회 내 기관에서 성인 멘토를 만난 경험을 보면 학원과 상담기관에서 10명 중 15명꼴로 가장 많아 학교의 기능을 일부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그림2-1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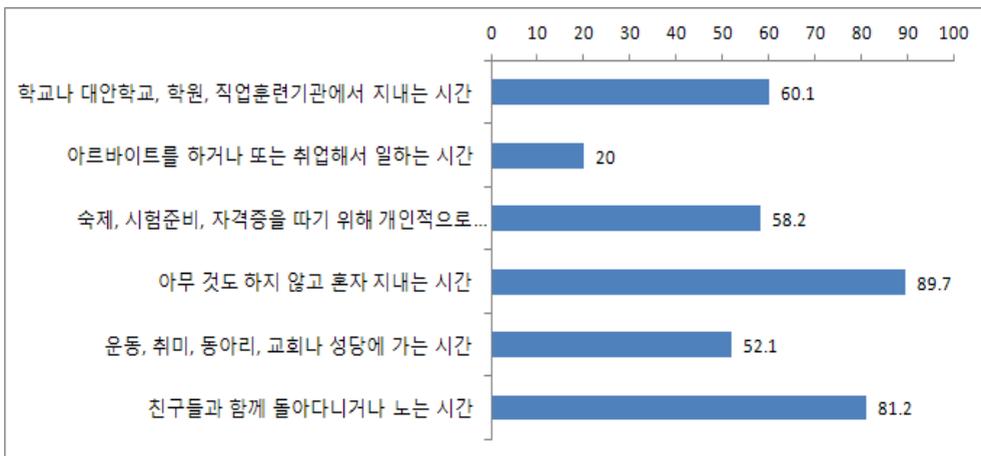
【그림 2-10】 학업중단 이후 만난 성인 멘토 (단위: %)

③ 학업중단 이후 진로계획

청소년은 학업중단 후 가장 필요했던 진로정보를 얻기 위해 주로 부모님 또는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87.5%), 인터넷 검색(69.2%)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의 향후 진로계획은 검정고시, 대학 진학, 복학 등 학업을 지속하려는 유형이 65.1%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 관련 계획과 진로 미결정은 각각 17% 내외 수준이다.

④ 학업중단 후 일상생활 및 가치관

학업중단 후 일상생활에서 학업 혹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60%, 아르바이트 등 경제활동 참여 청소년이 20%를 차지한다. 여가시간을 혼자 보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노는 청소년은 81.2%로 개인적인 공부나 운동 등의 긍정적 활동을 하는 청소년보다 많았다(그림 2-11] 참조).



【그림 2-11】 일상 생활시간 영역별 경험빈도 (단위: %)

한편,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력이 높을수록 대우받음, 대학교 졸업장이 없으면 차별받음, 중·고등학교 중퇴 학력으로는 취업 가능성이 거의 없음’이라는 세 문항에 상당수 동의하고 있어서 학력을 사회적 성공을 위한 중요 요인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보는 청소년이 92.6%, 성공가능성에 대해 긍정하는 청소년 84.8%로 조사되었다.

⑤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

학업중단 후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으로 학교를 그만둔 이후 현재 생활에 만족하거나(80.4%),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74.3%)는 등 상당수가 학업중단을 후회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지인에게 학업중단을 알리고 싶지 않거나, 학업중단으로 문제가 취급을 당하는 것 같다고 느끼는 청소년이 40~50% 이상으로 나타나 주변인의 시선에 민감한 양가감정을 보이고 있다. 학업중단에 대한 태도는 청소년 자신이 인지하는 가정의 경제수준과 중단 당시 학업성적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대안교육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 더 긍정적이고, 가정경제 수준과 학업성적 수준이 낮을수록, 학교 부적응이나 품행 문제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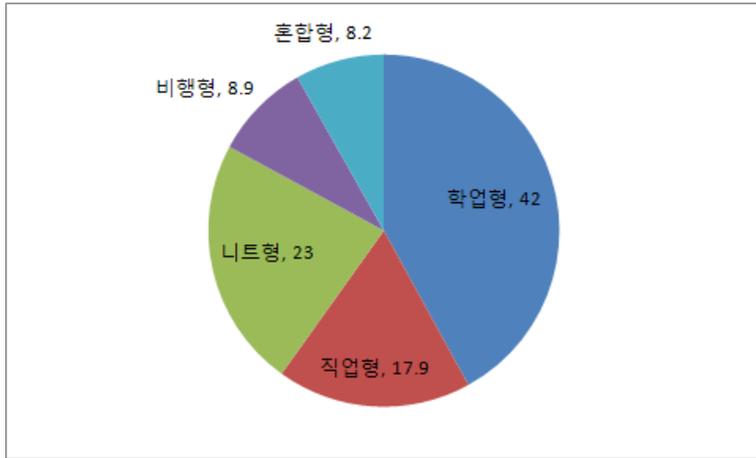
(2) 학업중단 이후 경로

① 경로 분포

본 연구의 분석 방식에 따라 학업중단 이후의 경로를 모형화하고 그 분포를 살펴본 결과, 학교에 다니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등 학업에 초점을 두는 학업형(42%), 학업이나 직업과 관련된 활동을 하지 않고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노는 무업 형 혹은 니트형(23%), 직업기술을 배우거나 일하는 직업형(17.9%), 가출이나 시설에 거주하는 비행형(8.9%), 혼합형(8.2%)으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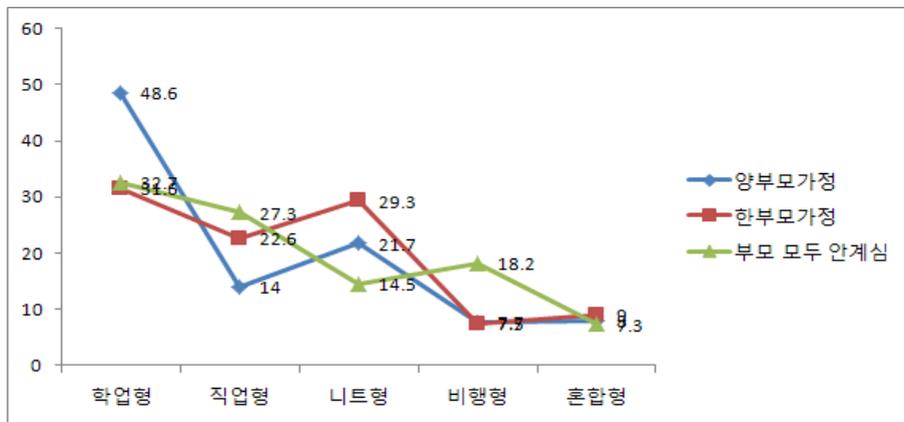
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가운데 10명 중 4명은 비록 학교를 그만두기는 했지만 학업까지 그만둔 것은 아니며 환경을 바꾸어 다시 학업을 지속하고 있었다. 또한 학업중단 이후 비록 학업을 지속하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출하거나 진출을 준비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보낸 청소년들도 17.9%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업중단 이후 특별한 계획이나 목표 없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응답자 중 23%는 학업중단 이후 학업을 계속하거나 직업과 관련된 활동도 하지 않은 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중단 청소년들 가운데 1/5 정도가 자신의 삶에 대한 방향성을 세우지 못한 채 중요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 방안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그림 2-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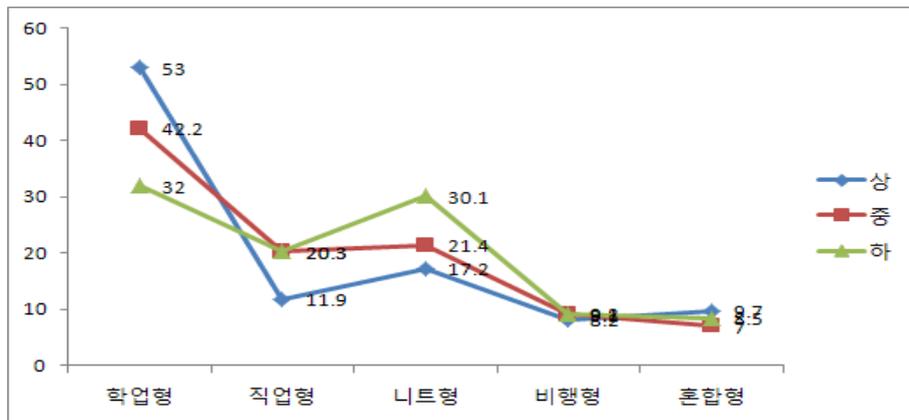


【그림 2-12】 학업중단 이후 경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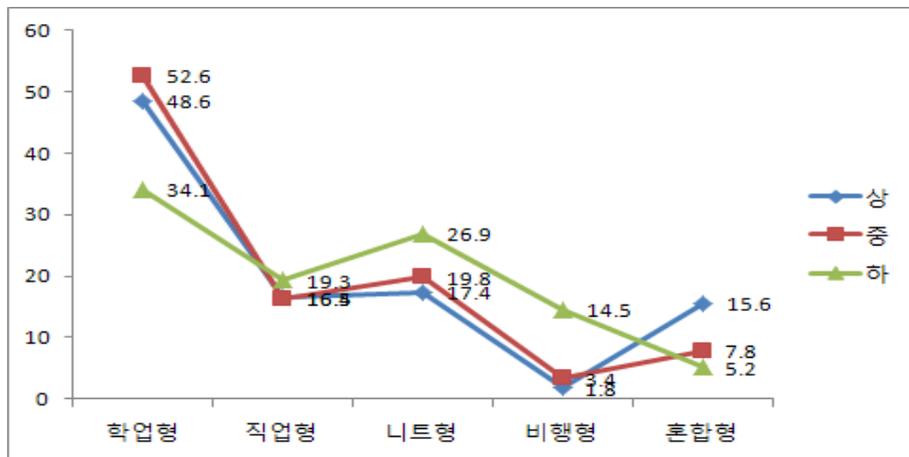
배경 변수에 따른 경로 유형의 차이를 보면 양부모 가정에 소속된 청소년은 학업형, 부모 모두 안 계신 가정에서는 비행형 비율이 높았으며([그림 2-13] 참조), 가정경제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학업형, 경제수준이 낮다고 인식할수록 직업형 비율이 높았다([그림 2-14] 참조). 또한 학업성적을 중위권 이상으로 인식할수록 학업형, 하위권으로 인식할수록 무업형, 비행형 비율이 높다([그림 2-15] 참조).



【그림 2-13】 가족구성에 따른 학업중단 이후 경로 분포 (단위: %)



【그림 2-14】 가정 경제수준에 따른 학업중단 이후 경로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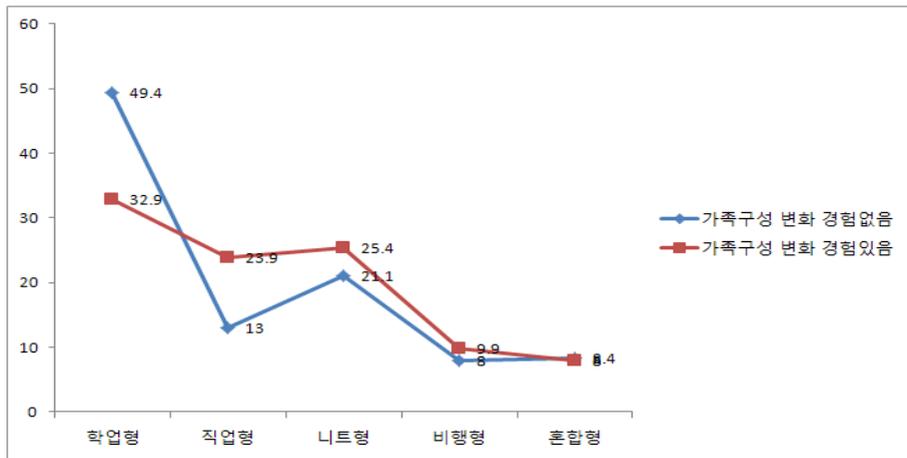


【그림 2-15】 학업성적에 따른 학업중단 이후 경로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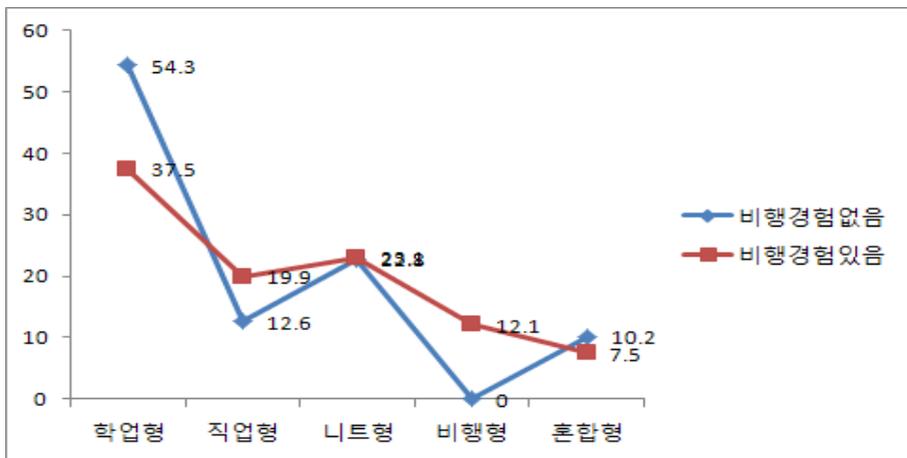
② 생애사건 경험과 학업중단 후 경로

청소년의 주요 생애사건(life events) 중 부모의 사망, 별거, 이혼으로 인한 가족 구성의 변화를 경험한 청소년은 44.9%, 흡연, 음주, 절도, 구타 등의 비행을 경험한 청소년은 73.2%를 차지하며 이러한 경험의 유무는 학업중단 후 경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성장과정에서 가족 구성의 변화를 경험한 청소년 집단에서는 직업형이, 무경험 집단에서는 학업형이 비교적 큰 비율 차로 상반되게 높았으며([그림 2-16] 참조), 비행 경험 집단은 무경험 집단에 비해 학업형이 적고, 비행형과 직업형이 다소 많으며, 비행 무경험 집단에서의 비행형 청소년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17] 참조).



【그림 2-16】 가족구성 변화경험 여부별 학업중단 이후 경로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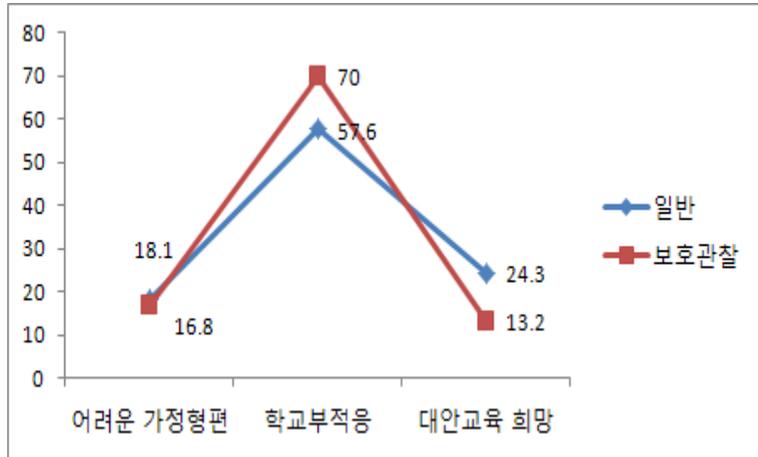
【그림 2-17】 비행경험 유무별 학업중단 이후 경로 분포 (단위: %)

5) 보호관찰 청소년의 학업중단 특성 및 중단 이후 삶

(1) 학업중단 시기 및 이유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이하 일반)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이하 보호관찰)의 학업중단 관련 특징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보호관찰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보다 학업중단 시기가 다소 빠른 초·중학교이며(43.2%), 일반 청소년이 주로 학교에 가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17.7%),

자신의 특기나 소질을 살리려는 이유(10.5%)로 학교를 관두는데 비해 보호관찰 청소년은 공부하기 싫거나(17.4%), 교사가 싫어서(8.9%) 학업을 중단하고 있었다([그림 2-18] 참조).



【그림 2-18】 학업중단 사유 집단비교: 일반 vs 보호관찰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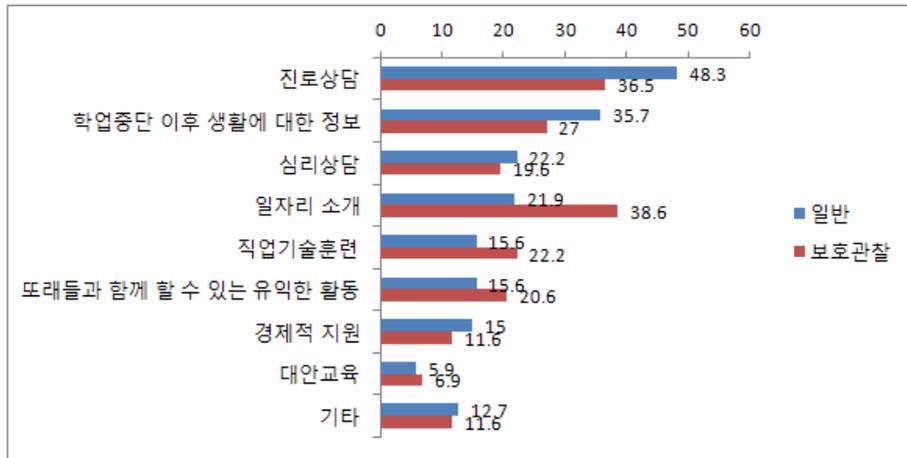
(2) 학교 복귀 경험

학업중단 이후 보호관찰 청소년의 복교율은 일반 청소년보다 약 3배 높은 30.8%로 보호관찰 청소년이 비교적 부모의 반대와 교사의 묵인과 무관심 속에 학업을 중단하고 있으며, 양 집단 모두 학교를 졸업하고 싶어서(일반 53.2%, 보호관찰 58.2%), 부모님이 원해서(일반 20.8%, 보호관찰 20%) 순의 이유로 복학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3) 학업중단 관련 정보제공 및 필요한 도움

양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학교의 정보제공 분야는 학업중단 숙려 제로 일반 청소년의 22.2%, 보호관찰 청소년의 5.8%가 해당 정보를 제공받았으며, 학업중단 숙려제를 이용해 본 보호관찰 청소년은 단 4명(2.1%)으로 제도의 유용성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한편, 보호관찰 청소년이 학업중단 시 가장 필요한 도움은 일자리 소개(38.6%)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1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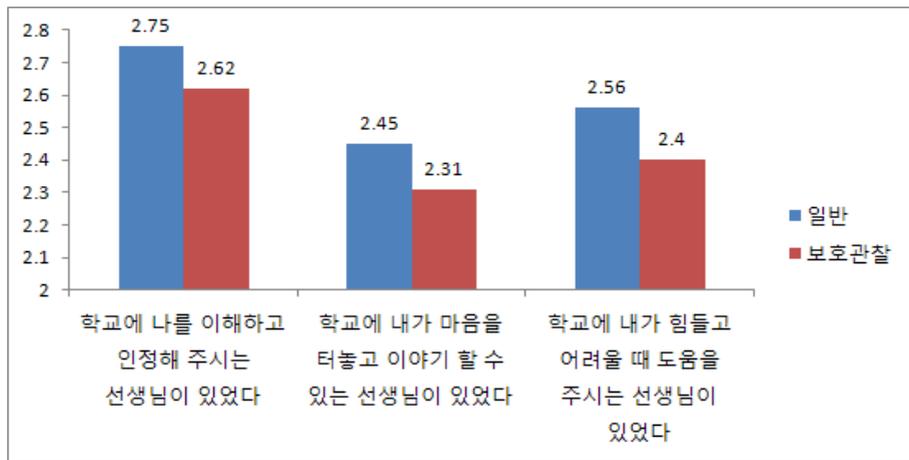


【그림 2-19】 학업중단 시 필요했던 도움 집단비교: 일반 vs 보호관찰 (단위: %)

(4)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개인적·환경적 특성(일반 청소년과의 비교)

보호관찰 청소년 집단의 개인·심리적 특성 중 자아 탄력성 평점은 일반 청소년 집단보다 높았으며(일반 2.87점, 보호관찰 2.95점), 대부분의 문제행동을 제외한 자살시도 경험은 일반 청소년 집단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적 특성을 보면 보호관찰 청소년은 부모의 방임과 신체적 학대 경험이 일반 청소년에 보다 높은 평균값을 보이며, 친한 친구나 학업중단 이후 새롭게 사귀 친구 수는 더 적지만 친한 친구들의 비행 성향은 상대적으로 높았고(일반 1.64점, 보호관찰 1.75점), 친구 중 학업중단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0]의 학교생활에서 교사와의 관계는 일반 청소년에 비해 부정적이며, 모든 영역의 학교 규정 위반 경험 빈도가 더 높았고, 학교 수업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일반 2.33점, 보호관찰 2.6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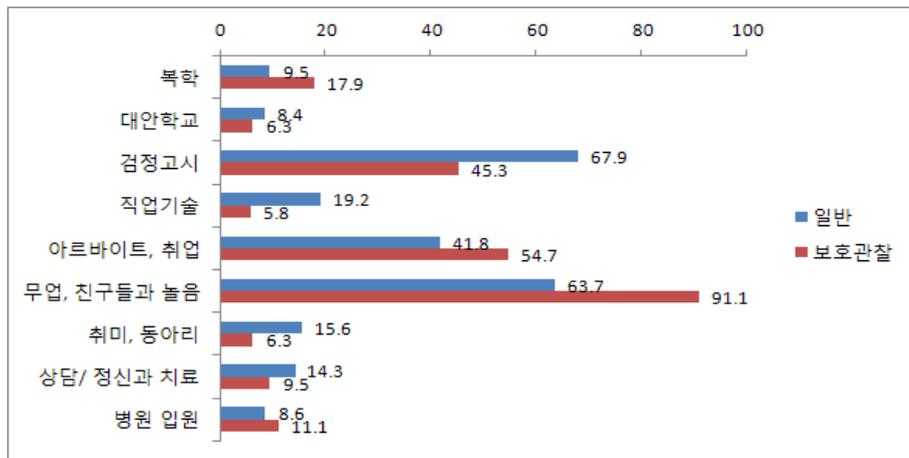
【그림 2-20】 교사관계 집단비교: 일반 vs 보호관찰 평균 (단위: 점)

생애사건 경험 특성을 보면 보호관찰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보다 친부모님의 별거(일반 24.5%, 보호관찰 37.4%), 이혼(일반 29.3%, 보호관찰 49.5%), 친아버지의 재혼 또는 새어머니가 들어오신 경우(일반 6.1%, 보호관찰 11.6%) 등 가족 구성의 변화를 더 많이 겪었으며, 일반 청소년들이 학교 교사로부터의 치욕적인 대우나 구타 경험(일반 17.7%, 보호관찰 11.1%), 전학 경험(일반 50.4%, 보호관찰 40%)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많았다.

(5) 학업중단 이후의 삶

① 학업중단 이후 경험

보호관찰 청소년의 학업중단 후 경험을 보면 일반 청소년보다 무위도식, 아르바이트/취업, 복학, 병원 입원 경험이 많은 반면, 대안학교나 검정고시, 직업기술 훈련, 취미/동아리 활동,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 경험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21] 참조).



【그림 2-21】 학업중단 이후 생활 집단비교: 일반 vs 보호관찰 (단위: %)

이러한 생활 차이뿐 아니라 주거 공간 면에서도 보호관찰 청소년의 경우 절반 가까이 소년분류 심사원 생활을 경험하였고(일반 2.1%, 보호관찰 45.3%), 기출 후 친구 집이나 PC방 혹은 가출팸 생활(일반 9.7%, 보호관찰 22.1%), 보호시설/쉼터 생활(일반 3%, 보호관찰 12.6%) 경험률이 확연하게 많았다.

② 학업중단 이후 사회적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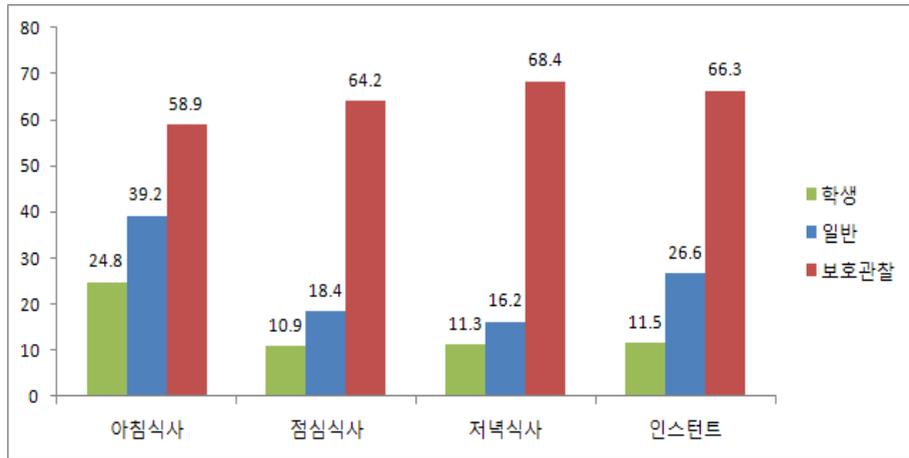
보호관찰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새로 사귀는 친구가 적었으며(일반 4.25명, 보호관찰 3.87명), 각 지역사회기관에서 성인 멘토를 만난 경험이 대부분 10% 미만으로 최대 15% 내외였다.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61.3%가 보호관찰소에서 성인 멘토를 만났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보호관찰을 받는 특성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이 대인관계 형성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학업중단 후 일상생활

보호관찰 청소년의 일상생활에서 학업시간은 비교적 적고(일반 60.1%, 보호관찰 13.7%), 경제적 활동으로 인한 근무시간은 길었다(일반 20%, 보호관찰 28.4%). 여가시간에는 일반 청소년이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것과 달리 보호관찰 청소년은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호관찰 청소년의 주 5일 결식률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크게 높는데, 특히, 저녁 결식률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일반 16.2%, 보호관찰 68.4%). 주 3회 이상의 인스턴트식품 섭취율도 더 높아(일반 26.6% vs 보호관찰 66.3%) 보호관찰 청소년이 비교적 불규칙하고 건강하지 못한 식생활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그림 2-22] 참조).



【그림 2-22】 주 5일 이상 결식을 집단비교: 학생 vs 일반 vs 보호관찰 (단위: %)

④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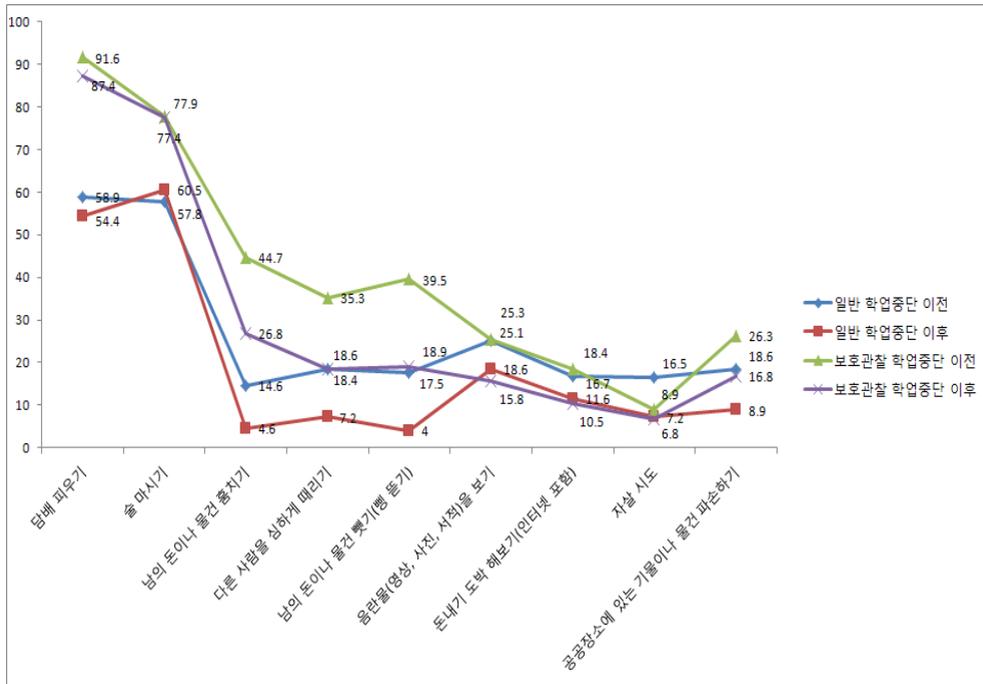
보호관찰 청소년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을 친구나 친척에게 더 알리고 싶지 않고(일반 48.9%, 보호관찰 69.5%), 학교와 같이 소속된 곳이 없어서 더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반 27.1%, 보호관찰 37.4%). 현재 생활의 만족도 역시 일반 청소년 집단의 절반 수준인 47.9%로 낮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인식도 낮으며, 학교를 안 다니는 것에 대한 후회가 많았다.

⑤ 학업중단과 문제행동

학업중단 전후 피해 경험과 달리 비행 경험은 집단 간 차이가 뚜렷하였다. 자살시도 외 흡연, 음주,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다른 사람 때리기, 남의 돈이나 물건 빼앗기 등 여러 비행유형에서 보호관찰 청소년의 비행률이 일반 청소년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학업중단 이후 양 집단의 음주, 흡연 외 모든 유형의 비행이 현격히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자살시도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비행률은 보호관찰 청소년에게서 높은 비율을 보인다.

자살 시도 경험의 경우 일반적인 비행 유형과 다른 경향을 보였다. 학업중단 이전 일반 청소년의

자살시도 경험률이 보호관찰 청소년의 약 두 배가 높았으나, 학업중단 후 일반 청소년의 1/2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보호관찰 청소년의 자살시도 경험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변화하였다 ([그림 2-23] 참조).



[그림 2-23] 학업중단 전후 비행경험 집단비교: 일반 vs 보호관찰 (단위: %)

3. 정책제언

1) 정책수립의 전제

학업중단 예방 및 지원 대책은 공평한 기회의 제공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국가정책으로 효과적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우선 정책 대상인 학업중단 청소년의 실태 파악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학업중단 예방 및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정책 주체 확립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까지의 전달 체계 구축과 서비스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특정 부처 및 일부 산하 기관만이 아닌 개방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를 마련하여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현장에서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학업중단 예방 및 청소년 지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책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정책으로서의 정당성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2) 학업중단 예방 대책

학업중단 고위험군 청소년과 학교에 대한 조기개입 그리고 실제적이고 실효적인 예방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 발생을 감소할 수 있다.

(1) 학업중단위기 학생에 대한 조기경보제 도입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은 학업중단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개입하는 것이다. 학업중단의 주요 표식은 무단결석과 낮은 학업성적으로, 저조한 학업성적은 학교 공부를 지속할 의미를 찾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돕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 학업중단 숙려제도 개선 및 전문가 인력 풀 구축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학업중단 조기 경보제로 전환하여 제도적 혜택 대상자를 확대하고 그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학업중단 위기 표식을 드러내는 학생들에게 찾아가는 전문 인력 풀(학교상담사, 청소년동반자 등)을 구축한다.

(3) 학교현장에 학업중단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제작 보급

시도교육청이 청소년의 학업중단 발생과정에 대한 이해와 학업중단의 예방, 학업중단 학생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대응매뉴얼을 제작하고 보급하도록 촉진한다. 이는 학업중단 예방과 대응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매뉴얼로 지역사회의 실제적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4) 특성화 고등학교 학업중단 예방대책 수립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율이 일반고와 특성화고(중전 전문계고 포함)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특성화고에서 학교 부적응을 원인으로 하는 학업중단율이 일반계 고등학교의 4배를 넘었는데, 특성화고의 부적응 사유 발생에 대한 현황 파악과 면밀한 분석, 더불어 학생 친화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 취약지역 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에 직업훈련 프로그램 확대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은 학습지원과 특기적성 교육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학업중단이 많이 발생하는 취약지역 학교에서는 학업 이외에 미래에 대한 동기, 진로교육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학업중단이 많이 발생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등에서도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지원 대책

(1) 학업중단 시 학교의 정보제공 및 상담지원 기능 강화

학교와 교사의 소극적인 역할, 학업중단 숙려제의 낮은 효용성 등을 감안할 때 학업중단 시 학교의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학업중단 시 학교가 학업중단 이후 삶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복교 절차, 진로상담기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청 단위로 관련 정보자료를 제작하여 제공하는 동시에 학교 교사 등의 진로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는 청소년이 학업중단 후 긍정적 경로로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에 기여할 수 있다.

(2) 대안교육기관 확대 운영, 학교선택권 제공을 통한 지역사회 대안교육역량 제고

① 대안교육기관 확대 및 운영지원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유익하고 긍정적인 활동과 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관, 박물관, 대학, 지역 문화센터, 복지관, 문화예술단체 등 다양한 지역 기관과 단체를 활용한 대안교육기관을 확대하고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청소년지도사와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사자격증 소지자, 문화예술인력 등의 지역사회 인적자원과 청소년 시설 등 지역사회 물적 자원을 결합한 다양한 대안교육 모델(청소년활동, 인문교양교육, 직업훈련 및 상담 등)이 창출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 운영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② 학교선택권 제공

현재의 위탁형 대안교육제도는 장기 결석, 품행 등의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몰아내는 기능이 강하므로 청소년 당사자의 성취동기가 부족하여 교육적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 지역사회기관들이 경쟁하며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들의 대안교육 선택 기회를 확대한다. 위탁형 대안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화와 양적 확대를 통한 교육 당사자의 선택권 부여,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및 자율성 보장 원칙이 관철되어야 할 것이다.

③ 취약지역에 공공 대안교육기관 우선 설치

미인가 대안교육기관들이 정규교육 학업중단 학생들을 수용하여 교육하고 있지만 학비 부담 및 수용 가능 인원의 제한으로 자유로운 취학이 어려운 현실이다. 교육부 또는 여성가족부가 학업중단 학생을 위한 공공시설로서 대안교육기관을 설치, 운영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윤철경, 2013a: 183).

(3) 학업중단자 유형별 맞춤형 지원정책 강화

우선 학업중단 시점에 따른 학업 혹은 취업 위주의 차별적 지원과 특별한 목표의식 없이 중단한 청소년들을 위한 복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출 및 비행 청소년 등 특수집단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보호, 자립지원 원스톱 지원시설(위기청소년지원센터)을 확대하도록

한다. 또한 학업중단 후 특정 목표 없이 방황하는 무업형 청소년이 쉬거나 모일 수 있는 공간적 장소 제공 및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유익한 활동으로 진로 설정을 돕는 거점 문화공간 설치와 직업형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친화적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취업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학업중단 후 청소년의 학업형, 니트형(무업형), 직업형, 취업형 경로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정책의 강화로 사회 적응을 제고시킬 수 있다.

(4) 긍정적 청소년활동 지원 대책 수립

학업중단 이후 대인관계 형성을 촉진하고 건전한 여가시간의 활용을 도모하며, 진로와 경험, 활동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자조모임과 온 오프라인의 동아리활동 지원 사업 등의 활성화를 통해 긍정적 청소년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심리적 지지와 사회적 고립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학업중단대책의 전달체계 구축

학업중단 대책의 전달 체계와 그 역할로 첫째, 지역교육청 내 전담부서 설치(교육청), 둘째,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별·교급별 학업중단 대책 수립 촉진과 전국 학업중단 정책지도 작성 및 평가(교육부 및 여성가족부), 셋째, 청소년 학업중단 사유에 대한 정확한 조사·기록 지침 마련 및 시행(교육부), 넷째, 학업중단 예방 및 복교 지원에 대한 학교 평가지표 설정 및 적용(교육부), 다섯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위기청소년(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제안하는 바이다.

발표 3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양 계 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201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13. 1. 1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귀화자·외국인주민 자녀는 모두 1,445,631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 50,948,272명 중 2.8%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2012년의 1,409,577명에 비하여 36,054명(2.6%) 증가한 수치이다(안전행정부, 2013). 이러한 외국인주민의 변동추이는 2008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향후 이러한 추세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 중 외국인주민자녀는 외국인주민 전체의 13.2%인 191,328명으로, 여기에는 부모 둘 다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과 한국인사이에서 태어난, 그리고 한국인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부모의 재혼으로 현재 외국인과 한국인의 결혼가정에 있는 경우 등 총 세 가지 유형이 포함된다(안전행정부, 2013).

한국사회에 점차 외국인 주민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사회통합정책의 일환으로 정부 주도의 다문화 정책이 이루어지고 서구의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이주민에 대한 정책이 발 빠르게 진행된 것은 사실이나 초기 정부 정책의 기초는 한국 사회에 유입된 결혼이민자나 이주노동자, 그들의 자녀들을 사회적응에 문제가 있고 사회통합에 방해가 되는 부정적인 존재로 규정하였고, 이주민 때문에 생긴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부정적 상황을 이주민 스스로 극복 또는 제거하게 함으로써 기존 사회질서를 회복하는 것이었다(김원, 2011). 심지어 결혼이민자나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경우 장차 성장하여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씨 또는 잠재적인 범죄자 집단으로

1) 본 원고는 2013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기본과제인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의 연구보고서 중 일부를 발췌하여 요약 정리한 것임.

인식하여, 사전에 미리 이들 자녀에 대한 관리를 적절히 하지 않는다면 향후 이들이 사회통합을 저해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매우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깔고 시작된 초기 지원정책들은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그리고 다문화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자발적 지원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사회적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 ‘다문화 가족청소년’이라는 범주에 속한 청소년들의 경우 가족의 사회경제적 계층, 부모의 출신국가차관, 종교,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정도 등 매우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다양한 삶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다문화 가족 청소년을 동질적인 하나의 집단으로 인식하는 것, 특히 그 인식의 내용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형성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나 고정관념의 대상 입장에서나 모두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유발하기 쉽다. 특정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에 대해 고정관념을 형성하게 되는 경우, 해당 집단에 속한 개인의 특성을 집단 전체의 특성으로 과잉 일반화 시킴으로써 그 집단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게 하고, 그 결과 사회통합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고정관념의 대상이 되는 집단 내 개인들에게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2010년도부터 시작되었다. 2010년도 연구 초기의 과제명은 「다문화 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I」로, 초등학교4학년 중 다문화배경을 지닌 청소년 대상 패널을 구축하여 종단적으로 추적하는 것을 목표로 한 예비연구였다. 2011년도에는 「다문화 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II」를, 2012년도에는 「다문화 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III」를 수행하였는데, 2010년의 예비조사를 기반으로 초등학교 4학년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고, 2년에 걸쳐 추적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본 연구인 「다문화청소년 종단 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은 위 패널조사연구의 연속선상에서 수행된 연구로, 2013년 현재 초등학교 6학년으로 성장한 다문화청소년을 2년째 추적 조사하였으며 2017년까지 향후 4년간 추가로 조사할 2단계 패널 연구의 첫 번째 해의 연구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2013년부터 시작되어 2017년까지 5년간 다문화청소년의 발달과정을 추적하는 종단연구로, 2010년도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2011년과 2012년도에 2차에 걸쳐 구축한 다문화청소년 패널자료를 연속적으로 추적하는 연구이다. 2010년부터 2012년도의「다문화 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I, II, III」의 목적은 다문화 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자료를 수집함으로써 다문화 가족 아동·청소년들이 비(非) 다문화 가족 아동·청소년들과 보이는 차이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었다(양계민, 김승경, 2010).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루어지는「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시리즈는 앞의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연구이나, 3년간의 종단자료가 축적되는 만큼 종단적 추적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다문화종단연구의 단계별 연구목적

단계	연도	단계별 연구의 목적
1단계	2010년 ~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자료를 수집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들이 비(非)다문화청소년들과 보이는 차이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 다문화청소년들이 발달 및 성장과정에서 일반가정 청소년과 보이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
2단계	2013년 ~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청소년의 발달과정을 종단적으로 추적하고,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 ■ 발달의 변화양상에 따른 유형을 구분하여 그 유형의 특성 및 유형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 ■ 다문화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과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대안 도출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1단계 연구를 수행하였고, 다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단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11년 ~ 2012년 연구의 함의	
· 다문화청소년은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발달수준이 다르다. :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라 발달수준 상이 : 소득수준이 '중' 또는 '상' 인 경우는 비(非)다문화가정 청소년과 발달수준에서 거의 차이가 없음. : 소득수준이 '하' 인 경우는 비(非)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비해 발달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다문화청소년 대상 지원들의 내용과 방식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 : 지원의 내용과 방식이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임 : 역량개발을 위한 내용 보다는 결핍의 시각에서 지원 => 보다 수요자 중심으로, 분리보다는 통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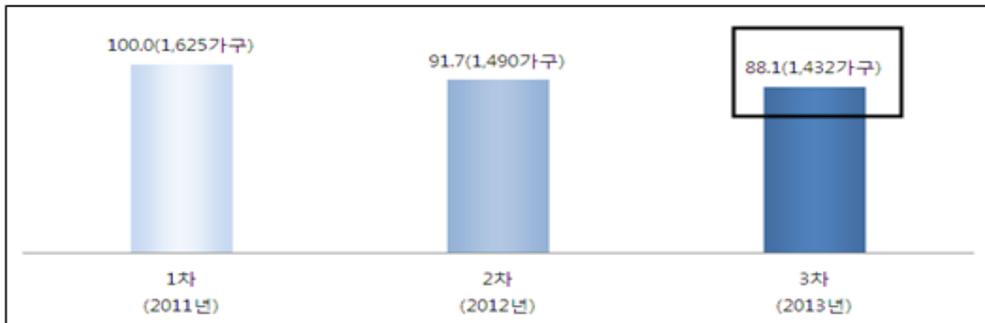
년도	차수 및 학년	심층분석 주제
4차년도 (2013년)	· 패널설문: 3차년도 추적조사 (초6) · 심층면접: 2차년도 추적조사	· 학업 및 학교생활
↓		
5차년도 (2014년)	· 패널설문: 4차년도 추적조사 (중1)	· 심리, 정서, 사회적응, 문제행동
↓		
6차년도 (2015년)	· 패널설문: 5차년도 추적조사 (중2)	· 자아정체성 및 이중문화정체성
↓		
7차년도 (2016년)	· 패널설문: 6차년도 추적조사 (중3)	· 진로인식 및 태도
↓		
5차년도 (2017년)	· 패널설문: 7차년도 추적조사 (고1)	· 전체 변인 총괄정리

【그림 1】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의 2단계(2013~2017년)의 연구 내용

3. 패널조사대상자 배경 특성

1) 패널 유지율

본 패널은 2011년 1차 본 조사시 1,625가구를 시작으로 하여 2012년 2차 조사 때는 1,490가구를 추적하였고, 2013년에는 1,432가구를 조사하였다. 따라서 2013년 기준 패널 유지율은 88.1%였다.



【그림 2】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유지현황

2) 조사대상 청소년의 연도별 성별 분포

본 패널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의 수는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다. 2011년도 1차 패널구축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인 남자 청소년 805명, 여자 청소년 830명을 합하여 총 1,635명이 참여하였고, 2012년도 2차 조사 때는 남자 청소년 742명, 여자 청소년 760명을 합하여 총 1,502명이 참여하였으며, 3차 년도에 해당되는 올해 2013년도에는 남자 청소년 707명, 여자 청소년 738명을 합하여 총 1,445명이 참여하였다.

표 2 조사대상 청소년의 수

(단위: 명)

성별 \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남	805	742	707
여	830	760	738
합계	1,635	1,502	1,445

※ 이 표는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의 수로, 쌍둥이가 있는 가구가 포함되어 패널 유지율 설명에서 제시한 가구기준의 분포와는 차이가 있음.

3) 부모의 출신국 비율

다음으로 조사에 참여한 다문화청소년의 어머니 출신국별 분포를 살펴보면 일본이 가장 많고, 다음이 필리핀, 중국 조선족, 중국 한족, 한국, 태국 등의 순이었다.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분포는 거의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꽤 널 탈락률에 어머니의 출신국이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부모님의 출신국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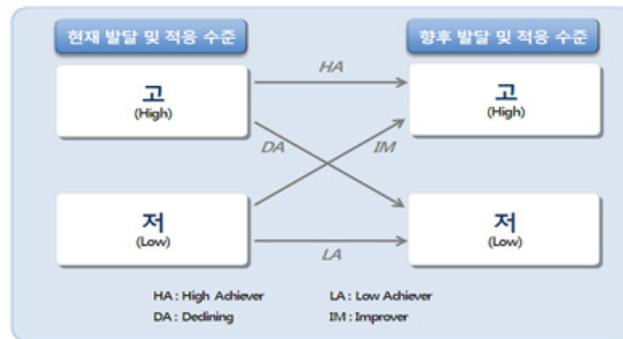
빈도(%)

출신국	년도 집단	2011년		2012년		2013년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한국		69(4.2)	1,476(95.4)	57(3.8)	1,366(95.9)	54(3.7)	1,322(96.0)
중국(한족, 기타민족)		126(7.7)	5(.3)	111(7.4)	3(.2)	102(7.1)	3(.2)
중국(조선족)		322(19.7)	1(.1)	287(19.1)	1(.1)	276(19.1)	1(.1)
베트남		42(2.6)	2(.1)	36(2.4)	2(.1)	37(2.6)	2(.1)
필리핀		401(24.5)	4(.3)	377(25.1)	5(.4)	359(24.8)	5(.4)
일본		528(32.3)	22(1.4)	502(33.4)	18(1.3)	488(33.8)	18(1.3)
대만		7(.4)	6(.4)	7(.5)	4(.3)	6(.4)	3(.2)
몽골		8(.5)	-	5(.3)	-	6(.4)	-
태국		56(3.4)	-	54(3.6)	-	53(3.7)	-
캄보디아		3(.2)	-	3(.2)	-	3(.2)	-
우즈베키스탄		12(.7)	1(.1)	10(.7)	-	10(.7)	-
러시아		17(1.0)	-	13(.9)	-	13(.9)	-
인도네시아		9(.6)	1(.1)	8(.5)	1(.1)	7(.5)	1(.1)
카자흐스탄		7(.4)	-	5(.3)	-	4(.3)	-
말레이시아		2(.1)	-	2(.1)	-	2(.1)	-
키르기스스탄		4(.2)	-	4(.3)	-	4(.3)	-
방글라데시		-	-	-	1(.1)	-	1(.1)
파키스탄		-	-	-	7(.5)	-	6(.4)
캐나다		-	-	-	2(.1)	-	2(.1)
인도		-	-	-	2(.1)	-	2(.1)
기타		22(1.3)	15(1.0)	21(1.4)	12(.8)	21(1.5)	11(.8)
합계		1,635(100)	1,547(100)	1,502(100)	1,424(100)	1,445(100)	

4.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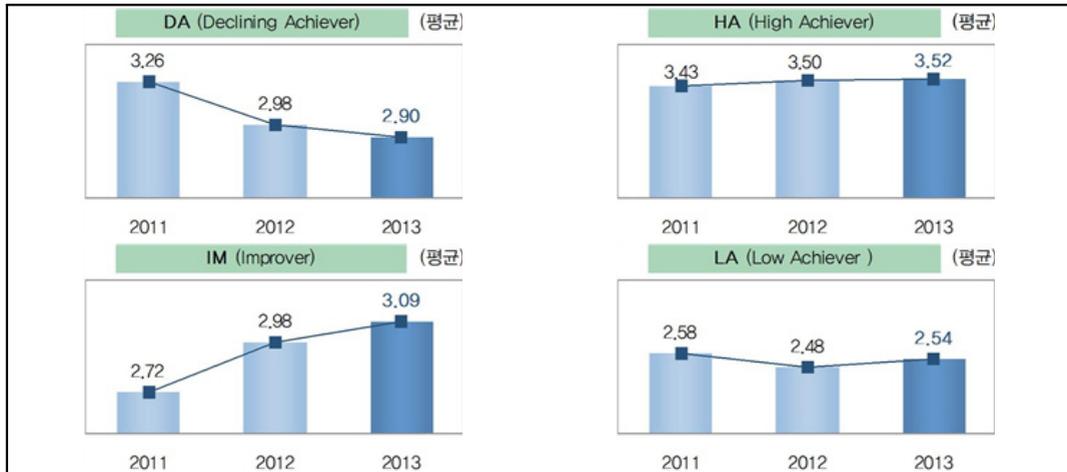
1) 발달양상 집단 분류

2013년도 목표 중 하나는 다문화청소년들을 아래의 그림에 제시된 바와 같이 네 가지 발달양상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2013년도에는 학교생활 적응을 선정하였다. 이에 학교생활 적응에 포함되는 학습활동, 교우관계, 교사 관계를 모두 포함하여 ‘학교생활 적응’이라는 변인을 구성하고,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평균값 기준 총 3년간 변화 추이를 기초로 집단을 도출하기 위하여 K-means 방식의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림 3】 발달특성에 따른 집단 구분

그 결과 아래에 나타난 바와 같이 네 가지 집단의 특성이 도출되었다.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학교생활 적응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첫 번째 집단은 평균값이 처음에 높았다가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지니고 있는 집단이고, 두 번째 집단은 지속적으로 높은 평균값을 유지하고 있는 집단이며, 세 번째 집단은 처음엔 낮았다가 점차 증가하는 집단이고, 마지막 네 번째 집단은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낮은 평균값을 지니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집단의 이름을 위의 모형에 근거하여 순서대로 DA(Declining Achiever), HA(High Achiever), IM(Improver), LA(Low Achiever)라 명명하였다.



[그림 4] 네 가지 발달특성집단별 학교적응의 년도별 변화추이

2) 발달양상에 따른 배경특성의 차이

① 집단별 소득수준

발달 양상의 특성에 따른 소득수준의 집단별 차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월평균 소득수준을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비록 F 값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사후검증(Duncan)에서는 집단별 소득수준의 차이의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고-고(HA) 집단의 소득수준이 가장 높고, 고-저(DA), 저-고(IM)가 다음의 수준이며 저-저(LA) 집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현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할지라도 종단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주제로, 지속적으로 높은 학교 적응 수준을 유지하는 아이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고, 반대로 지속적으로 낮은 학교 적응 수준을 유지하는 아이들은 소득수준이 낮은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적 수준이 사회계층을 결정하는 사회적 현상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으며,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놓인 다문화가정의 비율이 높은 현실에서 이러한 경향성이 점차 강화될 경우 다문화가정 자체가 사회의 소외계층으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표 4

발달양상 집단별 소득수준(2011-2013)

평균(표준편차):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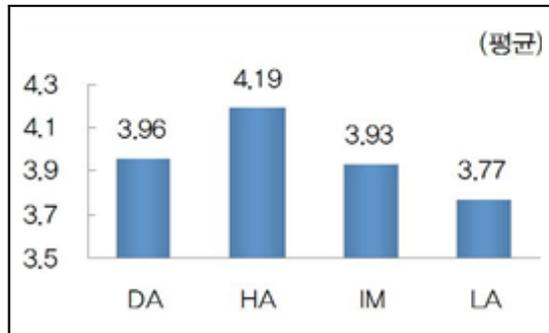
Duncan: a)b

② 아버지 교육수준

아버지의 교육수준에서 발달 특성에 따른 집단 차이가 나타났는데, 고-고(HA) 집단에 속한 청소년의 아버지 교육수준이 가장 높고, 다음이 고-저(DA), 저-고(IM) 집단이었으며 저-저(LA) 집단의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발달양상 집단별 아버지 교육수준

집단	평균(표준편차)	F
고-저 (DA)	3.96(1.13) _b	6.59***
고-고 (HA)	4.19(1.16) _a	
저-고 (IM)	3.93(1.14) _{bc}	
저-저 (LA)	3.77(1.09) _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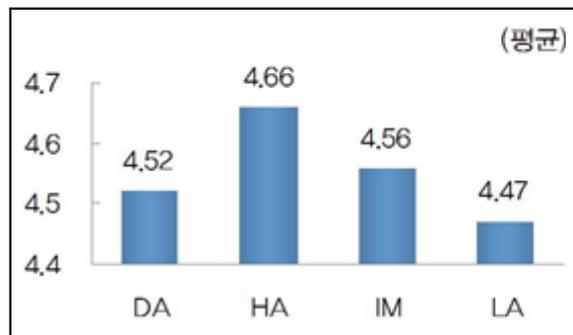
*** $p < .001$, Duncan: a)b)c

③ 어머니 교육수준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비해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으나 역시 고-고(HA) 집단에 속한 청소년들의 어머니 교육수준이 가장 높고 다음이 저-고(IM), 고-저(DA) 집단이었으며, 저-저(LA) 집단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발달양상 집단별 어머니 교육수준

집단	평균(표준편차)	F
고-저 (DA)	4.52(.96) _{ab}	2.28
고-고 (HA)	4.66(1.01) _a	
저-고 (IM)	4.56(.98) _{ab}	
저-저 (LA)	4.47(.98) _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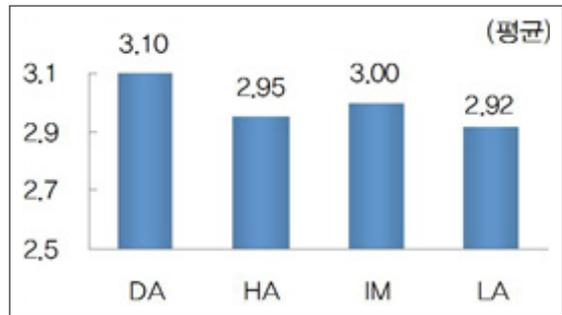
Duncan: a)b

④ 외국출신 아버지의 한국어능력

외국 출신 부모님의 한국어 능력이 집단마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버지가 외국 출신인 경우 아버지의 한국어 능력은 집단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발달양상 집단별 외국출신 아버지의 한국어 능력

집단	평균(표준편차)	F
고-저 (DA)	3.10(.82)	.13
고-고 (HA)	2.95(.87)	
저-고 (IM)	3.00(.65)	
저-저 (LA)	2.9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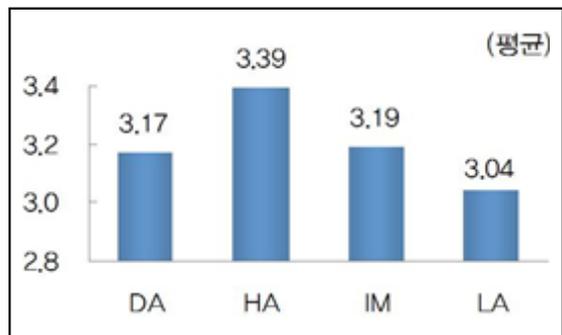


⑤ 외국출신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그러나 외국 출신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은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고(HA) 집단에 속한 청소년들의 어머니가 다른 집단 어머니들에 비해 한국어 능력 수준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었고, 저-저(LA) 집단의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인식되었다.

표 8 발달양상 집단별 외국출신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집단	평균(표준편차)	F
고-저 (DA)	3.17(.54) _b	20.12***
고-고 (HA)	3.39(.54) _a	
저-고 (IM)	3.19(.55) _b	
저-저 (LA)	3.04(.52) _c	



*** $p < .001$, Duncan: a)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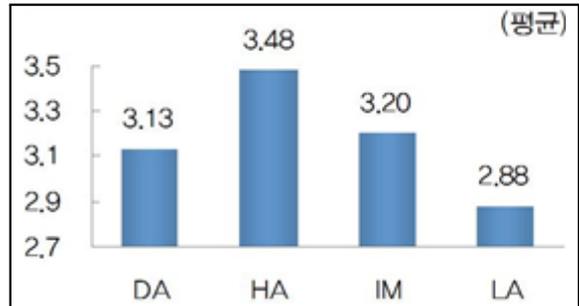
⑥ 부모의 양육태도: 감독

다음으로 부모의 양육태도 중 감독의 태도를 살펴본 결과 고-고(HA) 집단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저-고(IM) 집단, 다음이 고-저(DA) 집단이었으며 저-저(LA) 집단의 평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학교 적응 수준이 높은 경우는 부모의 감독 수준이 높으며, 지속적으로 낮은 집단의 경우 부모의 감독 수준이 다른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표 9 발달양상 집단별 부모양육태도: 감독

집단	평균(표준편차)	F
고-저 (DA)	3.13(.46) _c	69.48***
고-고 (HA)	3.48(.54) _a	
저-고 (IM)	3.20(.52) _b	
저-저 (LA)	2.88(.50) _d	



*** $p < .001$, Duncan: a)b)c)d

⑦ 부모의 양육태도: 방임

방임의 경우 위의 감독에 대한 내용과 일관되게 고-고(HA) 집단의 경우 방임의 점수가 가장 낮았고, 저-저(LA) 집단의 경우 방임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고(IM) 집단과 고-저(DA) 집단은 그 가운데 수준이었다.

표 10 발달양상 집단별 부모양육태도: 방임

집단	평균(표준편차)	F
고-저 (DA)	1.79(.59) _b	32.30***
고-고 (HA)	1.52(.65) _c	
저-고 (IM)	1.73(.58) _b	
저-저 (LA)	2.01(.56) _a	



*** $p < .001$, Duncan: a)b)c

3) 발달양상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① 학교생활적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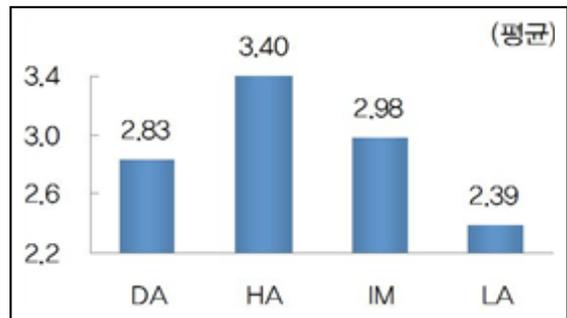
사실상 발달 양상별 집단 자체가 학교생활 적응을 근거로 산출되었기 때문에 집단 자체의 특성을 그대로 반복적으로 반영하는 경향성이 있으나 학습활동, 교사 관계, 교우관계의 각 경향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다시 제시하였다.

①-1. 학교생활 적응: 학습활동

학습활동의 경우 고-고(HA) 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고, 다음이 저-고(IM) 집단, 그다음이 고-저(DA) 집단, 그리고 저-저(LA) 집단의 평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발달양상 집단별 학교생활적응: 학습활동

집단	평균(표준편차)	F
고-저 (DA)	2.83(.35) _c	344.08***
고-고 (HA)	3.40(.41) _a	
저-고 (IM)	2.98(.36) _b	
저-저 (LA)	2.39(.39) _d	



*** $p < .001$, Duncan: a)b)c)d

①-2. 학교생활적응: 교사관계

학교생활 적응 중 교사 관계의 경우 역시 고-고(HA) 집단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저-고(IM) 집단, 다음이 고-저(DA) 집단 순이었으며, 저-저(LA) 집단의 값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발달양상 집단별 학교생활적응: 교사관계

집단	평균(표준편차)	F
고-저(DA)	2.86(.46) _c	309.27***
고-고(HA)	3.64(.44) _a	
저-고(IM)	3.14(.45) _b	
저-저(LA)	2.53(.53) _d	



*** $p < .001$, Duncan: a)b)c)d

①-3. 학교생활적응: 교우관계

교우관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고-고(HA) 집단의 평균값이 가장 높고, 다음이 저-고(IM) 집단, 다음이 고-저(DA) 집단, 마지막이 저-저(LA) 집단인 순서로 나타나 저-저(LA) 집단의 경우 교우관계 수준도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발달양상 집단별 학교생활적응: 교우관계

집단	평균(표준편차)	F
고-저 (DA)	3.01(.30) _c	295.73***
고-고 (HA)	3.52(.35) _a	
저-고 (IM)	3.14(.33) _b	
저-저 (LA)	2.71(.37) _d	



*** $p < .001$, Duncan: a)b)c)d

② 성적수준

보다 직접적으로 학교에서의 성적 수준을 비교해 본 결과 고-고(HA) 집단의 성적이 가장 높고, 다음이 저-고(IM) 집단, 고-저(DA) 집단 순이고 저-저(LA) 집단의 평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발달양상 집단별 성적수준

집단	평균(표준편차)	F
고-저 (DA)	3.32(.62) _b	105.42***
고-고 (HA)	3.84(.70) _a	
저-고 (IM)	3.40(.65) _b	
저-저 (LA)	2.87(.62) _c	



*** $p < .001$, Duncan: a)b)c

③ 성적에 대한 만족도

성적에 대한 만족도 역시 고-고(HA) 집단이 가장 높고, 다음이 저-고(IM) 집단이었으며 다음이 고-저(DA) 집단, 마지막으로 가장 만족도가 낮은 집단이 저-저(LA) 집단이었다.

표 15 발달양상 집단별 성적에 대한 만족도

집단	평균(표준편차)	F
고-저 (DA)	2.61(.71) _c	44.17***
고-고 (HA)	3.13(.75) _a	
저-고 (IM)	2.80(.74) _b	
저-저 (LA)	2.52(.76) _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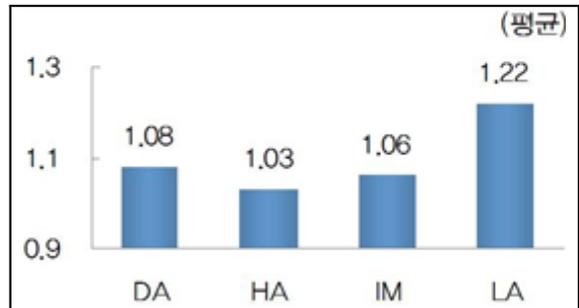
*** $p < .001$, Duncan: a)b)c

④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마지막 변인인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의 경우는 저-저(LA) 집단의 평균이 나머지 세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저-저(LA) 집단의 경우 학업성적, 교사 관계, 교우관계를 포함한 학교생활 전반에서 매우 취약한 집단임을 나타내었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표 16 발달양상 집단별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집단	평균(표준편차)	F
고-저 (DA)	1.08(.32) _b	19.33***
고-고 (HA)	1.03(.18) _b	
저-고 (IM)	1.06(.25) _b	
저-저 (LA)	1.22(.42) _a	



*** $p < .001$, Duncan: a)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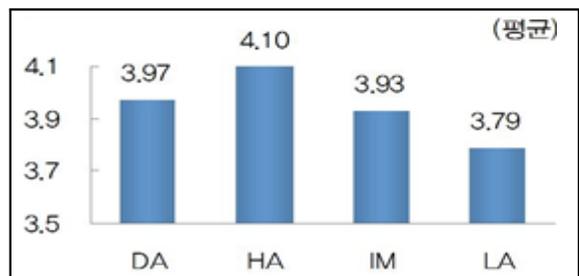
4) 발달양상에 따른 성취 및 학업적 포부의 차이

① 학업적 포부

다음으로 나중에 학교를 어디까지 다닐 것인지에 대해 초, 중, 고, 대, 대학원 중 고르도록 하고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도록 코딩하여 평균을 산출한 결과, 고-고(HA) 집단의 경우 평균이 가장 높았고, 저-고(IM) 집단과 고-저(DA) 집단이 다음으로 높았으며, 저-저(LA) 집단의 경우 가장 평균값이 낮아서 학업적 포부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발달양상 집단별 학생이 원하는 학력 수준

집단	평균(표준편차)	F
고-저 (DA)	3.97(.49) _b	16.50***
고-고 (HA)	4.10(.53) _a	
저-고 (IM)	3.93(.49) _b	
저-저 (LA)	3.79(.62) _c	



*** $p < .001$, Duncan: a)b)c

② 성취동기

성취동기의 수준을 집단별로 비교한 결과 다른 변인에서와 마찬가지로 고-고(HA) 집단의 성취동기가 가장 높고 다음이 저-고(IM) 집단이며 그다음이 고-저(DA) 집단, 저-저(LA) 집단

순이었다.

표 18 발달양상 집단별 성취동기

집단	평균(표준편차)	F
고-저 (DA)	2.94(.40) _b	106.94***
고-고 (HA)	3.32(.45) _a	
저-고 (IM)	2.97(.44) _b	
저-저 (LA)	2.68(.46) _c	



*** $p < .001$, Duncan: a)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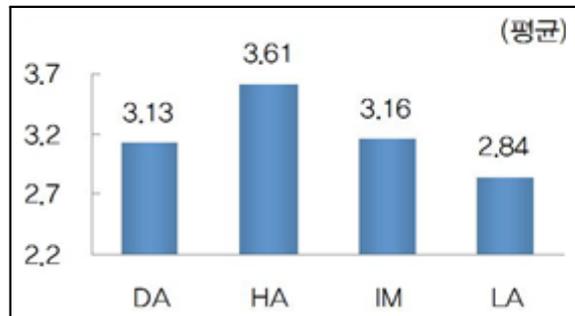
5) 발달양상에 따른 심리·사회적응 및 정체성의 차이

① 자아존중감

첫째로 자아존중감을 집단별로 살펴본 결과 다른 결과와 일관되게 고-고(HA) 집단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저-고(IM) 집단과 고-저(DA) 집단, 마지막이 저-저(LA) 집단으로 가장 낮았다.

표 19 발달양상 집단별 자아존중감

집단	평균(표준편차)	F
고-저 (DA)	3.13(.47) _b	143.10***
고-고 (HA)	3.61(.42) _a	
저-고 (IM)	3.16(.48) _b	
저-저 (LA)	2.84(.50) _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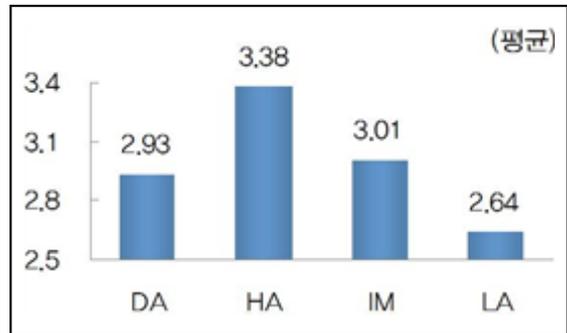
*** $p < .001$, Duncan: a)b)c

② 자아탄력성

자아 탄력성의 경우도 고-고(HA) 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저-고(IM) 집단, 다음이 고-저(DA) 집단, 가장 낮은 집단이 저-저(LA)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발달양상 집단별 자아탄력성

집단	평균(표준편차)	F
고-저 (DA)	2.93(.32) _c	182.52***
고-고 (HA)	3.38(.45) _a	
저-고 (IM)	3.01(.38) _b	
저-저 (LA)	2.64(.39) _d	



*** $p < .001$, Duncan: a)b)c)d

③ 신체만족도

신체에 대한 만족도 역시 고-고(HA) 집단이 가장 높고 다음이 저-고(IM) 집단, 다음이 고-저(DA) 집단의 순이고 저-저(LA) 집단의 신체 만족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발달양상 집단별 신체만족도

집단	평균(표준편차)	F
고-저 (DA)	2.94(.46) _b	71.59***
고-고 (HA)	3.26(.48) _a	
저-고 (IM)	2.96(.44) _b	
저-저 (LA)	2.72(.44) _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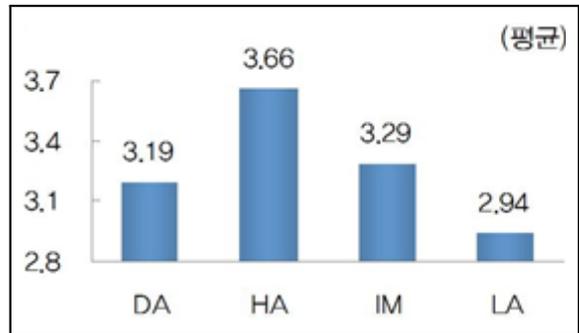
*** $p < .001$, Duncan: a)b)c

④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역시 집단별로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고-고(HA) 집단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높은 집단이 저-고(IM) 집단, 다음이 고-저(DA) 집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저(LA) 집단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표 22 발달양상 집단별 삶의 만족도

집단	평균(표준편차)	F
고-저 (DA)	3.19(.50) _c	96.99***
고-고 (HA)	3.66(.49) _a	
저-고 (IM)	3.29(.51) _b	
저-저 (LA)	2.94(.65) _d	



*** $p < .001$, Duncan: a)b)c)d

⑤ 우울

우울의 경우는 저-저(LA) 집단의 우울 정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이 고-저(DA) 집단, 저-고(IM) 집단, 고-고(HA) 집단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발달양상 집단별 우울

집단	평균(표준편차)	F
고-저 (DA)	1.68(.49) _b	88.68***
고-고 (HA)	1.33(.44) _d	
저-고 (IM)	1.58(.48) _c	
저-저 (LA)	1.98(.54) _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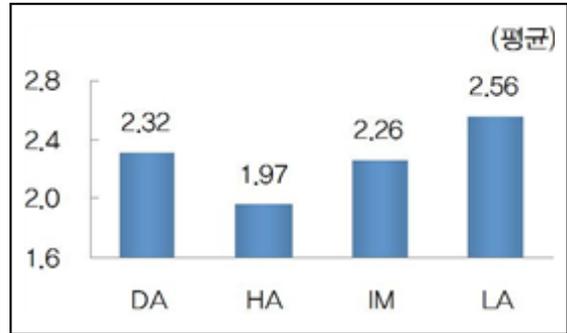
*** $p < .001$, Duncan: a)b)c)d

⑥ 사회적 위축

사회적 위축의 경우도 유사한 양상으로 저-저(LA) 집단의 사회적 위축 정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이 고-저(DA) 집단, 그다음이 저-고(IM) 집단 순이었으며 고-고(HA) 집단의 평균값이 가장 낮았다.

표 24 발달양상 집단별 사회적 위축

집단	평균(표준편차)	F
고-저 (DA)	2.32(.68) _b	34.24***
고-고 (HA)	1.97(.78) _c	
저-고 (IM)	2.26(.66) _b	
저-저 (LA)	2.56(.65) _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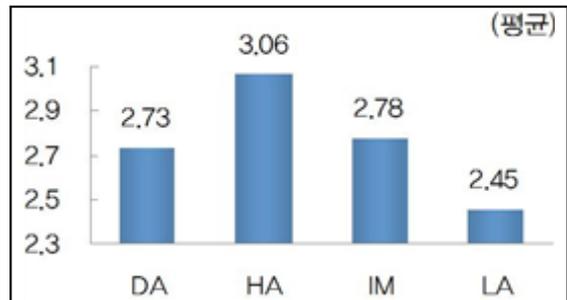
*** $p < .001$, Duncan: a)b)c

⑦ 한국인 정체성

한국인에 대한 동일시 정도를 질문한 한국인 정체성에 대해서는 고-고(HA) 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저-고(IM) 집단, 고-저(DA) 집단, 저-저(LA) 집단의 순이었다.

표 25 발달양상 집단별 한국인 정체성

집단	평균(표준편차)	F
고-저 (DA)	2.73(.56) _b	48.07***
고-고 (HA)	3.06(.68) _a	
저-고 (IM)	2.78(.59) _b	
저-저 (LA)	2.45(.62) _c	



*** $p < .001$, Duncan: a)b)c

⑧ 다문화수용성

자신과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어느 정도까지 가까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 다문화 수용성에 대해서도 고-고(HA) 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저-저(LA) 집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발달양상 집단별 다문화수용성

집단	평균(표준편차)	F
고-저 (DA)	2.93(.45) _b	65.43***
고-고 (HA)	3.32(.58) _a	
저-고 (IM)	2.97(.48) _b	
저-저 (LA)	2.78(.54) _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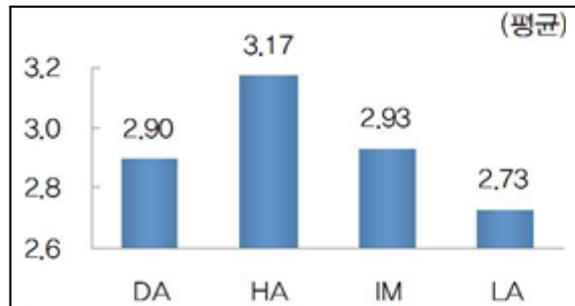
*** $p < .001$, Duncan: a)b)c

⑨ 이중문화수용태도

한국의 문화의 부모님 나라의 문화를 둘 다 수용하는 정도인 이중 문화 수용태도는 고-고(HA) 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저-고(IM) 집단, 고-저(DA) 집단이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저-저(LA) 집단의 평균이 가장 낮았다.

표 27 발달양상 집단별 이중문화 수용태도

집단	평균(표준편차)	F
고-저 (DA)	2.90(.35) _b	74.74***
고-고 (HA)	3.17(.39) _a	
저-고 (IM)	2.93(.35) _b	
저-저 (LA)	2.73(.34) _c	



*** $p < .001$, Duncan: a)b)c

⑩ 문화적응스트레스

문화 적응 스트레스의 경우도 지금까지의 여러 변인에서와 마찬가지로 일관된 결과를 산출하였다.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고-고(HA) 집단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낮고 다음이 저-고(IM) 집단과 고-저(DA) 집단이며 저-저(LA) 집단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발달양상 집단별 문화적응 스트레스

집단	평균(표준편차)	F
고-저 (DA)	1.36(.40) _b	29.46***
고-고 (HA)	1.19(.28) _c	
저-고 (IM)	1.33(.39) _b	
저-저 (LA)	1.49(.49) _a	



*** $p < .001$, Duncan: a)b)c

7) 발달양상특성에 따른 신체발달의 차이

① 키

네 집단별 키를 비교해본 결과 다른 세 집단에 비해 저-저(LA) 집단의 평균이 유의미하게 작아서 저-저(LA) 집단의 경우 다른 집단보다 신체적 성장에서도 지체되는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향후 이러한 발달 양상이 아무런 처치 없이 지속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며 각 집단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주는 결과이다.

표 29 발달양상 집단별 키

집단	평균(표준편차)	F
고-저 (DA)	150.35(7.24) _a	2.72*
고-고 (HA)	150.50(7.34) _a	
저-고 (IM)	150.20(7.16) _a	
저-저 (LA)	148.83(7.65) _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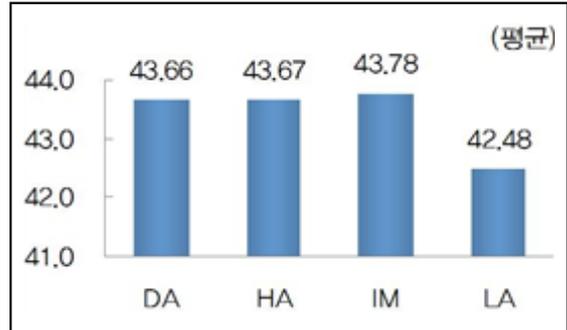
* $p < .05$, Duncan: a)b

② 몸무게

몸무게의 경우는 저-저(LA) 집단이 수치상으로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다.

표 30 발달양상 집단별 몸무게

집단	평균(표준편차)	F
고-저 (DA)	43.66(9.61)	.97
고-고 (HA)	43.67(9.78)	
저-고 (IM)	43.78(9.61)	
저-저 (LA)	42.48(1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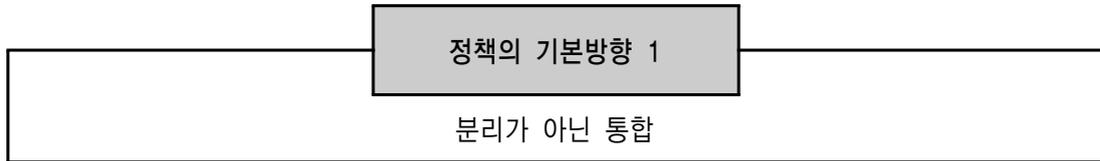
5.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청소년들은 배경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발달양상이 서로 다른 집단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정책은 다문화 청소년의 부정적 동질성에 근거한 일률적 지원에서 탈피해 다양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해서는 단순히 부족한 측면의 지원에 예산이 집중될 것이 아니라, 능력 있고 역량 있는 청소년에게는 그들에 맞는 적합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부적응 청소년의 경우는 그들에게 맞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등 수요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한국 사회 다문화청소년 대상 지원정책의 방향과 원칙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이다. 역시 본 연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좀 더 장기적인 자료가 수집될 경우 청소년들의 성장단계마다 필요한 욕구와 발달 특성을 분석해낼 수 있을 것이고, 그 결과 보다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개발하는 데 있어 타당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정책제언



가장 우선적으로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은 분리가 아닌 통합을 기조로 삼을 필요가 있다. 기존의 방식과 같이 다문화청소년들을 ‘다문화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선별하여 지원하는 방식은 다문화청소년을 비(非) 다문화청소년들과 다른 존재임을 지속적으로 인식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기에, 기본적으로는 모든 지원의 내용을 비(非) 다문화청소년들과 동일한 지원 내에서 하되, 선별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분리하여 지원하는 이중적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보면, 다문화청소년들의 경우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발달 및 적응의 수준이 매우 다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특히 올해 연구결과에서 보면 종단적인 발달양상을 보았을 때 지속적으로 적응수준이 높은 집단과 반대로 지속적으로 적응수준이 낮은 집단은 그 특성상 매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도 연구에서 다문화청소년들을 비(非) 다문화청소년들과 비교해본 결과 소득수준이 중간이거나 높은 집단의 경우는 다문화집단과 비(非) 다문화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저소득 집단에서만 차이가 나타났는데, 저소득 집단에서는 다문화집단이 비(非) 다문화집단에 비해 발달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다문화청소년은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라는 것이고, 둘째는 저소득층에 속한 다문화청소년은 같은 저소득층의 비(非) 다문화청소년에 비해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청소년 대상 정책들이 다문화청소년들의 다양성에 좀 더 집중을 해야 하는 동시에 저소득층에 속하는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좀 더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해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해 일률적인 지원을 하기보다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을 좀 더 강화하여 그 안에 포함된 다문화청소년들이 ‘다문화집단’으로 특별히 구분되지 않아도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방향에서 크게 두 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다문화’라고

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지원을 서비스 중심의 지원으로 초점을 바꾸는 것, 둘째는 지금까지 형성되어 온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낙인감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핵심과제 1	대상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	-----------------

분리가 아닌 통합을 기조로 하는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방향 중 첫 번째 핵심과제는 대상 중심으로 서비스 중심으로 정책의 초점을 바꾸는 일이다. 현재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대부분의 지원프로그램은 소득수준이나 청소년의 발달 및 적응 수준과 상관없이 ‘다문화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다문화청소년’들만 모이는 또는 ‘비(非) 다문화청소년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되어있다. 사실상 ‘비(非) 다문화청소년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도 일반적인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다문화청소년’의 정체성을 가지고 비(非) 다문화청소년과 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다문화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가능한 일반적인 청소년 프로그램 내에서 다문화청소년과 비(非) 다문화청소년이 구별 없이 자연스럽게 ‘청소년’이라는 정체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중심의 사업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인 프로그램 내에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도록 한다고 해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관심이나 예산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청소년 지원 예산을 일반적인 지원 예산에 포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 다문화청소년과 비(非) 다문화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 다문화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든가 추가로 지원을 더 한다든가 하는 방식을 검토하여, 다문화청소년이 존재함으로써 학교의 교육 환경이 더 좋아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식일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과제 2	낙인감(Stigma) 방지 방안 마련
--------	----------------------

낙인감 방지 방안 마련은 하나의 정책이라기보다는 모든 정책의 기본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정당화하다 보니 지금까지의 정책은 모두 다문화청소년들이 개인적 역량이나 사회경제적 계층과 상관없이 무조건 부족하고 불쌍한, 지원이 필요한 집단이라는 인식에 기반하여 이루어졌고, 그 결과 다문화청소년들이 지원을 받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부정적 낙인이 형성되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는 것은 향후 한국

사회의 사회적 통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낙인을 형성하지 않으면서 비(非) 다문화청소년과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지원방안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다문화’에 대한 지원을 강조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낙인을 강화시키고 기존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정책보다는 일반적인 청소년 정책 내에 다문화청소년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청소년이 우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대상 청소년들에게는 그러한 내용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대 제도를 정밀하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의 기본방향 2	
지원과 역량강화의 균형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다문화청소년들은 모두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라 다양한 특성을 지닌 집단이다. 특히 본 연구의 3년간 결과를 종단적으로 추적하여 발달 양상을 구분해 본 결과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적응을 잘 하는 집단이 있고, 점차 적응 수준이 상승하는 집단, 반대로 점차 하강하는 집단, 지속적으로 적응 수준이 낮은 집단 등 네 집단이 있고, 각 집단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발달 특성별로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발달 및 적응 수준이 지속적으로 낮은 집단의 경우는 환경 및 심리적 특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고등교육과정에서 중도탈락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들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서는 주로 부족한 측면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고, 반대로 발달 및 적응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거나 점차 향상되는 집단의 경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역량 강화 및 리더십 향상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지원과 역량 강화의 방법은 비(非) 다문화청소년과의 통합적 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다문화청소년만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인 부분에서는 별도의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핵심과제 3	다문화청소년의 발달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	--------------------------------

본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청소년들은 그들이 지닌 배경 특성과 개인 역량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발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도 그들의 요구와 현실에 부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며, 발달 및 적응 수준이 높은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과 발달 및 적응 수준이 떨어지는 다문화청소년의 지원정책의 내용이 서로 달라야 함을 말해주는 결과이다. 예를 들어 다문화청소년 중에서 적응 수준이 높고 발달상 큰 문제가 없는 일반적인 집단의 경우 일반 청소년들과 통합하여 일반적인 리더십 프로그램, 이중언어 프로그램, 사회봉사 프로그램 등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반면 발달 및 적응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는 학습 멘토링, 독서지도, 각종 심리치료 및 상담,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 청소년의 역량을 끌어올려서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적응하는 것을 목표로 지원하는 방안이 적합할 것이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학교 적응 및 학업성취는 전반적인 발달과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자아정체감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만큼 지원 초기에는 학습지원과 독서지도 등 학교생활 적응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지원을 집중적으로 하고, 점차 특기적성이나 체험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지원을 확대시킬 수 있다.

핵심과제 4	다문화청소년의 주도성 및 리더십 역량 강화
--------	-------------------------

다문화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주도성과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발달 및 적응 수준이 높은 집단에 속한 청소년들의 경우 향후 한국 사회의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에 적합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는 주도성 강화 프로그램, 리더십 프로그램, 이중언어교육 등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에는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인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이 높을 수 있으나 점차 한국 사회의 인식이 변하고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증가함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전혀 문제시 하지 않고 당당한 다문화청소년들이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지역사회 리더 청소년을 배출하여 봉사하는 것과는 별개로, 각 출신 국가별 다문화청소년들이 스스로 리더십 훈련을 받고 리더 집단이 되어 같은 출신 국가의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해주는 경우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청소년 대상 정책은 주로 한국어와 이중언어에 관한 내용이 많고 그 외에는 일회성 캠프나 멘토링, 학습지원 등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점차 청소년들이 성장하면서 사춘기에 이르게 되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다문화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문화청소년들을 위한 심리·정서적 적응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이혼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적응을 위하여 자아정체감 프로그램, 자아존중감 프로그램, 자아성찰 프로그램, 자기주장 훈련 등 기존의 프로그램에 다문화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학교보다는 지역 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 센터 등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에 모여서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중학교 이상의 사춘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아정체감 프로그램의 경우 다문화청소년들의 독특한 정체감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들이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다문화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어떻게 건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정책의 기본방향 3

지지집단의 역량강화

정책의 기본 방향 중 세 번째는 다문화청소년을 둘러싼 지지집단의 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역량 강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다문화청소년들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서는 청소년을 둘러싼 부모, 학교, 지역사회가 모두 다문화적 감수성을 강화시키고 다문화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추므로써 다문화청소년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환경 여건을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지지집단의 역량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가정과 학교 외에도 다문화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내 다문화 수용성도 중요하다.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들을 접하는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 관련 기관 실무자들의 다문화 수용성

증진 및 다문화청소년 지도 방법 등에 대한 부분 역시 중요한데, 현재 청소년지도사 직무연수 내에 다문화에 대한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론적인 수준이고, 구체적으로 다문화청소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다문화청소년과 일반 청소년들을 구별하지 않고 활동을 지도하는 방법, 지도하는 가운데에 조심해야 하는 것 등 다문화적 민감성을 기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핵심과제 6	부모교육 및 역량강화
--------	-------------

학부모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은 일반 학부모 교육에 반드시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되는데, 학부모가 일반 학부모와 함께 교육을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다면 일반적인 학부모 교육에 포함시켜서 함께 교육을 해도 되지만, 다문화청소년과는 달리 학부모들은 일반 학부모와 함께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불편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다문화청소년들이 비(非) 다문화청소년들과 동질적인 부분도 있으나 서로 다른 부분도 현실적으로 존재하여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기도 하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들을 지도할 수 있는 자녀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하여 자녀교육의 내용, 학교의 교육방침, 한국 학교의 진로, 학습지도, 다양한 학습지원방안 등에 대해 교육을 제공하고, 그 외 자녀교육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아버지 교육을 강화하여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를 교육에 관여시키고 그 결과 자녀의 교육과 역량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시키는 부모교육을 기획 및 구성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 대상으로 자녀지도와 관련하여 어렵다고 생각되는 점, 자녀의 교육 및 진로와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 등에 대하여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에서 도출된 결과에 근거하여 교사와 다문화 전문가가 협의를 통해 학부모 대상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각 학교별이 아니라 각 교육지원청 또는 지역 내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교육을 진행한다 면 지역 내 다문화청소년의 학부모들이 각 학교를 방문하여 의도치 않게 자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 없이 학부모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자녀교육에 대한 지식과 방법을 배우는 것도 있으나 이러한 교육을 통해 학부모가 자녀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자녀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도록 하여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과제 7	교사 다문화역량 강화
--------	-------------

다문화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적응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교사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은 많지 않으며, 교사 대상 다문화교육도 일부 관심 있는 교사들만 들을 뿐이다. 따라서 다문화적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전무한 경우가 대다수일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들을 지도하는 학교 교사의 다문화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는 교사 연수시간을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다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뿐 아니라 다문화청소년을 대하는 법, 교실 내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 다문화청소년과 비(非) 다문화청소년을 통합하여 교육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 등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다루어서 실제 다문화적 학교 상황에서 교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학교 전체의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 외에 다문화담당교사를 정하여 전문연수를 실시하여 각 학교 내에서 다문화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다문화 전문교사를 배출하여 일반 청소년 대상 다문화교육과 다문화청소년 상담 및 지도 등 학교 내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시키는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과제 8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기관 실무자 다문화역량강화
--------	----------------------------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서는 학교나 가정뿐 아니라 청소년지도사 등 청소년 관련 기관의 실무자들의 다문화역량 강화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 청소년지도사들의 직무연수에 다문화교육을 하고 있기는 하나 교육의 시간이나 교사 연수와 마찬가지로 다문화와 관련한 이론적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지도사들의 경우 학교와 달리 지역사회 내 청소년기관 내에서 교사보다 훨씬 친근하게 청소년들을 접촉하고 있고, 특히 학교생활에서 적응 수준이 낮거나 학업에 관심이 비교적 없는 청소년들도 학교 밖에서 청소년지도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심리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청소년 지도자들의 연수과정 내에 다문화에 대한 이론적 내용 외에 다문화청소년을 대할 때 유의점, 다문화청소년과 비(非) 다문화청소년의 통합 활동 시 유의해야 할 점 등 실제적인 부분에 대한 연수 내용도 함께 제공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다문화청소년을 지도할 때 유의점, 가이드라인 및 반 차별 지침 등을 정하여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핵심과제 9	다문화가정 출신 교사 양성
--------	----------------

청소년의 주변에 있는 지지집단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의 역량 강화 및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는 방법 중 하나로 다문화가정 출신 청소년을 교사로 양성하여 학교에 파견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실제 다문화적 감수성을 증진시키고 다문화청소년들에게 롤모델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초등학교에 대다수 재학 중이나 점차 중학교와 고등학생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이고 이들이 점차 성장함에 따라 우수한 고등학생 중 사범대에 진학할 의지가 있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사범대나 교육대 입학시 다문화청소년에게 우대가산 점수를 부여하는 등 사범대 및 교육대 입학을 장려하여 이주배경의 청소년이 교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문화청소년들이 사범대나 교육대를 졸업하면, 본인이 원할 경우 다문화청소년이 많이 분포한 학교에 우선 배정하여 다문화청소년들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청소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들을 다문화가정 출신의 교사가 직접 다루어줄 수 있도록 하여 다문화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한다면 가정이나 일반교사들이 줄 수 없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발표 4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안 선 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학교와 학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청소년기의 생활 방식이 '표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을 '일하는 존재'로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 사회에서 낮설다. 그래서인지 청소년기의 아르바이트가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는 그리 크지 않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아도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아르바이트를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일하는 청소년이 엄연히 존재하며 그 수가 최근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이다. 이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대상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청소년이 일하는 환경을 건전하게 조성해야 할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왜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떤 방식을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안전하고 더 나아가 이들의 성장에 유익할 수 있기 위해 정책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필요가 여기 있다. 본 원고에서는 2013년 한국청소년 정책 연구원이 수행한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I」 연구 결과 중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부분의 내용을 소개한다.

2.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1) 설문조사 목적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청소년 아르바이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데 과학적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설문조사 방법

본 설문조사의 조사대상, 표본크기, 표집방식 및 조사기간은 <표 1>과 같다.

표 1		설문조사 방법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전국의 중학교 1, 2, 3학년과 고등학교 1, 2, 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 (제주도 포함)	
표본크기	10,119여명	
표집방식	층화다단계집락표집 - 지역, 학교유형(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등), 학교 수 및 학생 수를 고려한 변형비례배분방식	
조사기간	2013년 5월 20일(월) ~ 2013년 7월 12일(금)	

2) 설문조사 결과

(1) 아르바이트 참여율

우리 사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수는 1990년대 말 IMF 외화위기를 거치면서 크게 증가했다. 경제적 곤란을 겪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청소년 자녀들이 경제활동을 해야 할 필요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조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대부분 15~30% 정도를 오기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표 2		학년별에 따른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단위: %(명)
내용/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경험 유무	유	3.4(54)	5.8(94)	10.7(183)	19.0(326)	28.4(488)	33.3(562)	
	무	96.6(1531)	94.2(1540)	89.3(1528)	81.0(1392)	71.6(1228)	66.7(1127)	
전체		100.0(1585)	100.0(1634)	100.0(1711)	100.0(1718)	100.0(1716)	100.0(1689)	

우리나라 청소년들 중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하기 위해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들 중 조사 시점까지 한 번 이상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7%로 나타났다.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아르바이트 경험해 본 청소년의 비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교급과 학년별로 아르바이트 경험을 한 청소년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중학교 시기에 한 번 이상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비율은 10%를 넘고, 고등학교 3학년에 와서는 3분의 1이 이상이 한번 이상 아르바이트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2)

표 3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 학교관련특성 단위: %(명)

내용/구분	교급		고교계열			학업성적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	특성화	특목/자율	낮은편	보통	높은편	
아르바이트 경험	있다	6.7(332)	26.9(1376)	22.8(843)	50.2(458)	14.5(75)	22.3(755)	15.6(636)	12.0(305)
	없다	93.3(4599)	73.1(3747)	77.2(2848)	49.8(455)	85.5(444)	77.7(2626)	84.4(3450)	88.0(2238)
	전체	100.0(4931)	100.0(5123)	100.0(3691)	100.0(913)	100.0(519)	100.0(3381)	100.0(4086)	100.0(2543)
	χ^2	721.709***		323.454***			119.516***		

***p<.001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에 차이를 가져오는 변인을 살펴본 결과, 고교 계열 간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경우 절반 이상인 50.2%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데 비해 일반계고 학생은 22.8%, 특목고/자율고 학생들은 14.5%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학업성적 수준별로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학업성적이 낮은 편(22.3%)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높은 편(12.0%)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에 비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비율이 10% 이상 높게 나타났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경제적 배경 특성이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와 뚜렷한 관련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다고 응답하는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이 '낮은 편'(26.9%)이라고 응답한 청소년들 중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경제적 수준이 '높은 편'(12.0%)이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의 2배가 넘었고, 부모의 교육수준이

2) 본 조사가 1학기 말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해당학년의 2학기에 아르바이트에 처음 경험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자연적으로 본 결과에는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실제 각 학년말까지의 아르바이트 경험율은 여기서 제시된 수치보다 높을 것이다.

‘고졸 이하’인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비율은 부모의 교육수준이 ‘석사’이상인 청소년들에 비해 3~4배가량 높았다.

표 4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 사회경제적배경특성 단위: %(명)

내용/구분	부교육수준				모교육수준				경제적 수준			
	고졸 이하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석사 이상	고졸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석사 이상	낮은편	보통	높은편	
아르바이트 경험	있다	23.9(837)	17.9(114)	12.3(381)	6.7(47)	22.4(984)	16.8(105)	10.2(257)	5.4(21)	26.9(616)	15.9(637)	12.0(443)
	없다	76.1(2670)	82.1(522)	87.7(2708)	93.3(653)	77.6(3418)	83.2(519)	89.8(2259)	94.6(369)	73.1(1670)	84.1(3374)	88.0(3262)
	전체	100.0(3507)	100.0(636)	100.0(3089)	100.0(700)	100.0(4402)	100.0(624)	100.0(2516)	100.0(390)	100.0(2286)	100.0(4011)	100.0(3705)
	χ ²	213.069***				206.257***				231.085***		

***p<.001

(2) 아르바이트 직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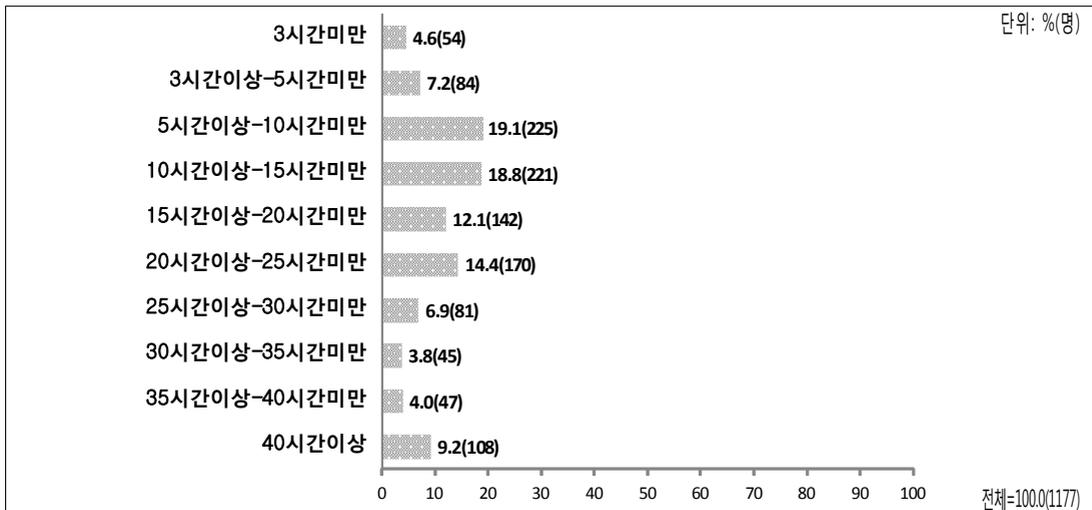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경험한 아르바이트의 종류를 조사한 결과, 전단지 돌리기가 29.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음식점 서빙(20.5%), 뷔페, 웨딩홀 안내 및 서빙(10.4%) 응답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아르바이트 종류

내용/구분	%(명)	내용/구분	%(명)		
1순위	전단지돌리기(스티커 붙이기)	29.8(1019)	11순위	공장에서 노동	1.9(65)
2순위	음식점 서빙	20.5(700)	12순위	이벤트 행사장 도우미	1.6(56)
3순위	뷔페, 웨딩홀 안내/서빙	10.4(356)	13순위	주유소 주유원	1.6(55)
4순위	24시간 편의점 점원	6.2(211)	13순위	사무업무 보조	1.6(55)
5순위	기타	6.1(209)	15순위	카페 점원	1.5(53)
6순위	패스트푸드점(피자, 치킨) 점원	5.9(202)	16순위	건설현장 노동	1.5(50)
7순위	상품 판매(옷, 장신구 등)	2.5(87)	17순위	놀이공원 도우미	.5(18)
8순위	음식 오토바이 배달	2.5(85)	18순위	노래방 점원	.5(17)
9순위	PC방 점원	2.4(83)	19순위	퀵서비스, 심부름 서비스	.5(16)
10순위	택배 집 나르기(이사짐 운반 포함)	2.3(79)	20순위	(노래방을 제외한) 유흥업소 직원	.1(4)

(3) 주당 평균 근무시간

최근 1년간(2012 6월~2013년 5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을 조사한 결과, 5시간 이상~10시간 미만이 19.1%로 가장 많았고, 10시간 이상~15시간 미만이 18.8%를 차지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20시간 이상 일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38.3%였고, 40시간 이상 일했다는 응답한 청소년이 9.2%로 나타나는 등 근로시간이 상당히 긴 청소년의 비율이 낮지 않아 이들이 학교 적응이나 가정생활, 교우관계 등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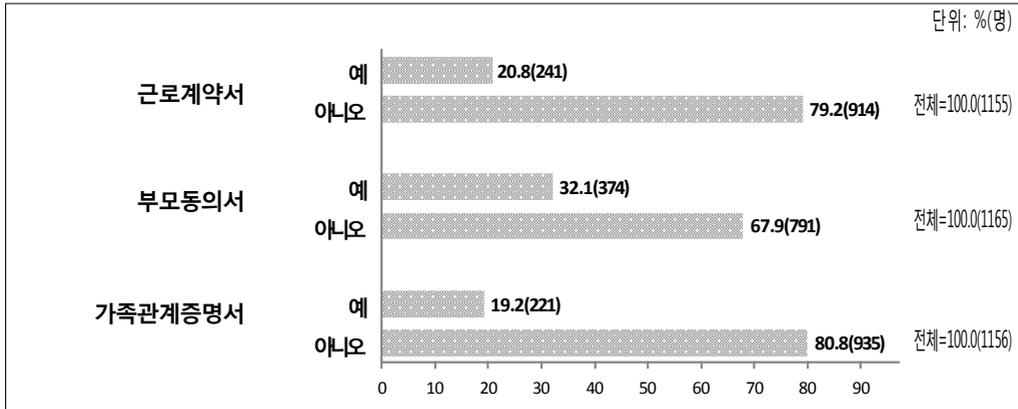


[그림 1] 평균주당근무시간

(4) 근로보호 수준

① 서류 작성 및 제출 여부

청소년들의 근로보호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장치로 볼 수 있는 근로 계약서, 부모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의 제출 여부를 질문한 결과,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비율이 20.8%로 나타났고, 부모 동의서 제출은 32.1%,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은 19.2%로 나타났다. 2011년 고용노동부의 조사(임영식 외, 2011) 결과와 비교했을 때 관련 서류를 작성 또는 제출한 비율이 더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서류 작성 및 제출 여부

② 업무상 재해 경험

업무상 재해 경험을 조사한 결과, ‘뜨거운 것에 데인 적이 있다’가 32.0%로 가장 많았고, ‘날카로운 것에 베인 적이 있다’가 24.3%로 두 번째로 높은 발생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무거운 짐을 들다 허리를 삐끗한 적이 있다’ 12.4%,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다친 적이 있다’ 9.6%, ‘뼈가 부러지거나 찢은 적이 있다’ 4.9%,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 3.4%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업무상 재해 경험 빈도

단위: %(빈도)

내용/구분	없다	한번	두번	세번	네번이상	N
뜨거운 것에 데인 적이 있다	68.0(793)	12.5(146)	8.4(98)	4.3(50)	6.8(80)	100.0(1167)
날카로운 것에 베인 적이 있다	75.7(884)	11.8(138)	5.7(67)	2.7(32)	4.0(47)	100.0(1167)
뼈가 부러지거나 찢은 적이 있다	95.1(1111)	2.5(30)	1.1(13)	1.1(13)	.1(1)	100.0(1167)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	96.6(1128)	1.7(19)	1.0(12)	.7(8)	.0(0)	100.0(1167)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다친 적이 있다	90.4(1054)	5.0(58)	2.3(27)	1.2(14)	1.2(14)	100.0(1167)
무거운 짐을 들다 허리를 삐끗한 적이 있다	87.6(1023)	7.0(82)	2.6(30)	1.3(15)	1.5(18)	100.0(1167)

③ 부당처우 경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 경험을 했는지 여부를 유형별로 조사한 결과, ‘맡은 일 이외에 다른 일까지 억지로 한 적이 있다’가 16.8%로 가장 높았고, ‘초과근무에 대한 초과수당을 받지 못한 적이 있다’ 15.6%,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한 적이 있다’ 14.2%, ‘임금을

제 때 받지 못한 적이 있다' 12.6%, '고객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11.8% 순으로 나타났다(중복응답).

④ 부당처우 경험시 대처 방법

아르바이트 중 부당한 경험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참고 계속 일했다'는 응답이 33.2%로 가장 높았고, '그냥 일을 그만두었다'는 응답 비율이 24.3%로 두 번째로 높았다. '고용노동부나 경찰에 신고했다'는 비율은 3.8%, '교사나 교육청의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은 1.2%, '상담소나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은 7%에 그쳤다.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응답도 9.8%에 달해 청소년들이 근로 중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7 아르바이트 관련 부당한 경험 후 대처했던 방법

내용/구분		%
1순위	참고 계속 일했다	33.2
2순위	그냥 일을 그만 두었다	24.3
3순위	개인적으로 항의하였다	14.3
4순위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몰랐다	9.8
5순위	친구나 지인의 도움을 받았다	7.7
6순위	고용노동부나 경찰 등에 신고하였다	3.8
7순위	가족에게 알려서 도움을 받았다	3.5
8순위	기타	1.4
9순위	교사나 교육청의 도움을 받았다	1.2
10순위	상담소나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았다	.7

주: 다중응답으로 처리하여 N값이 일치하지 않음(N=324)

⑤ 연소자 노동관계 법제 인지 수준 및 인지 경로

우리나라 법률에는 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뿐만 아니라 연소자의 근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준수되어야 할 사항들이 정해져 있다. 고용주가 이에 대해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와 동시에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 문헌연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청소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핵심적인 연소자 근로 보호 관련 노동관계 법제 내용을 선정하여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항목은 ‘아르바이트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61.5%)과 ‘2013년도 최저임금’(55.25) 두 항목에 그쳤다.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항목이 17항목 중 5항목을 차지했는데,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지 14일 이내에 고용주가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15.2%), ‘4시간 일할 경우 30분의 쉬는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15.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일한 경우,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다’(10.6%), ‘고용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아도 근로복지공단에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8.7%), ‘학교나 교육청에 알바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있다’(6.1%) 등이다.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에 따라 연소자 근로보호 관련 법 인지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관련 법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모든 항목에서 확연하게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조차도 기본적인 연소자 근로보호 관련 법제에 대한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점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8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에 따른 연소자 노동관계 법률 및 제도 단위: %

내용/구분	아르바이트 경험여부		평균	
	있다	없다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안다	75.9	58.5	61.5
	모른다	24.1	41.5	38.5
	전체	100.0	100.0	100.0
	χ^2	176.054***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 2장을 만들어서 사장님과 학생이 한 장씩 가져야 한다	안다	34.3	22.9	24.8
	모른다	65.7	77.1	75.2
	전체	100.0	100.0	100.0
	χ^2	96.906***		
2013년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 원이다	안다	74.4	51.3	55.2
	모른다	25.6	48.7	44.8
	전체	100.0	100.0	100.0
	χ^2	298.047***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3년 안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다	안다	37.3	26.5	28.3
	모른다	62.7	73.5	71.7
	전체	100.0	100.0	100.0
	χ^2	79.437***		
고용주(사장)는 일을 그만둔 지 14일 이내에 밀린 임금(아르바이트비)을 지급해야 한다	안다	21.9	13.8	15.2
	모른다	78.1	86.2	84.8
	전체	100.0	100.0	100.0

내용/구분	아르바이트 경험여부		평균	
	있다	없다		
	χ^2	70.036***		
고용주(사장)가 청소년근로자에게 하루 7시간, 1주일에 40시간 이상 일을 시킬 경우, 청소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안다	28.8	21.0	22.4
	모른다	71.2	79.0	77.6
	전체	100.0	100.0	100.0
	χ^2	48.282***		
휴일 근무, 초과근무, 야간근무를 할 경우, 원래 받기로 한 시급(시간당 임금)의 50%를 더 받을 수 있다	안다	38.4	26.1	28.2
	모른다	61.6	73.9	71.8
	전체	100.0	100.0	100.0
	χ^2	103.353***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일한 경우,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다	안다	15.8	9.5	10.6
	모른다	84.2	90.5	89.4
	전체	100.0	100.0	100.0
	χ^2	58.366***		
4시간 일할 경우 30분의 쉬는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	안다	22.9	13.5	15.1
	모른다	77.1	86.5	84.9
	전체	100.0	100.0	100.0
	χ^2	97.542***		
일하다가 다치거나, 일 때문에 병에 걸리면 고용주(사장)으로부터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안다	55.3	43.8	45.7
	모른다	44.7	56.2	54.3
	전체	100.0	100.0	100.0
	χ^2	74.656***		
고용주(사장)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아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등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안다	11.4	8.1	8.7
	모른다	88.6	91.9	91.3
	전체	100.0	100.0	100.0
	χ^2	19.100***		
18세 미만인 자를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일을 시킬 경우 고용주(사장)는 근로자(아르바이트생)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안다	40.8	26.4	28.9
	모른다	59.2	73.6	71.1
	전체	100.0	100.0	100.0
	χ^2	142.113***		
일하다 부당한 처우를 당할 경우 청소년을 도와주는 신고전화(☎1644-3119 또는 ☎1388)가 있다	안다	29.0	25.2	25.9
	모른다	71.0	74.8	74.1
	전체	100.0	100.0	100.0
	χ^2	10.798***		
학교나 교육청에 알바신고센터가 설치돼 있다	안다	8.8	5.5	6.1
	모른다	91.2	94.5	93.9
	전체	100.0	100.0	100.0
	χ^2	27.657***		
만15세 미만(중학교 2학년 이하) 청소년에게 일을 시킬 경우 고용주(사장)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안다	29.8	22.3	23.5
	모른다	70.2	77.7	76.5
	전체	100.0	100.0	100.0
	χ^2	45.062***		

내용/구분	아르바이트 경험여부		평균	
	있다	없다		
고용주는 청소년에게 일을 시킬 경우 부모님(보호자)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서 보관해야 한다	안다	59.4	37.6	41.3
	모른다	40.6	62.4	58.7
	전체	100.0	100.0	100.0
	χ^2	275,980***		
만19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고용주(사장)가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일이나 업종(직업의 종류)이 있다	안다	46.8	31.9	34.3
	모른다	53.2	68.1	65.7
	전체	100.0	100.0	100.0
	χ^2	139,522***		

청소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연소자 근로 보호에 관한 법률 사항을 알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항목별로 관련 정보를 얻게 된 경로를 조사하였다. 청소년들이 연소자 근로 보호에 관한 법률을 알게 되는 경로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TV와 인터넷이었다. 학교를 통해 관련 법률 사항을 알게 된 비율은 항목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제시된 인지 경로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했다.

표 9 아르바이트 관련 법, 규칙에 대한 인지 경로

단위: %(명)

내용/구분	인지경로						
	학교	TV	인터넷	친구	가족	기타	전체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9.3(1063)	32.1(3649)	30.5(3471)	11.5(1313)	9.7(1102)	6.9(780)	100.0(11378)
2013년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 원임	7.3(723)	30.9(3076)	30.5(3031)	14.5(1446)	10.8(1070)	6.0(593)	100.0(9939)
일하다가 다치거나, 일 때문에 병에 걸리면 고용주(사장)로부터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음	7.2(532)	33.3(2472)	28.6(2127)	7.3(544)	13.0(964)	10.7(793)	100.0(7431)
고용주는 청소년에게 일을 시킬 경우 부모님(보호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서 보관해야 함	8.4(592)	21.9(1546)	26.9(1900)	17.6(1240)	14.2(1000)	11.0(776)	100.0(7053)
만19세 미만 청소년 고용 시, 고용주(사장)가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일/업종(직업 종류)이 있음	8.8(529)	30.7(1851)	31.1(1874)	9.2(555)	8.9(537)	11.3(679)	100.0(6026)
18세 미만인 자를 밤 10시~새벽 6시 사이에 일을 시킬 경우 고용주(사장)는 근로자(아르바이트생)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함	8.5(391)	28.8(1331)	31.2(1442)	11.3(523)	10.0(460)	10.2(469)	100.0(4616)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최저임금을 받지	8.8(385)	31.5(1380)	32.9(1440)	9.9(432)	9.5(414)	7.5(328)	100.0(4378)

내용/구분	인지경로						
	학교	TV	인터넷	친구	가족	기타	전체
못해도 3년 안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음							
휴일 근무, 초과근무, 야간근무를 할 경우, 원래로 한 시급(시간당 임금)의 50%를 더 받을 수 있음	9.4(416)	25.5(1132)	29.5(1309)	10.3(459)	15.7(700)	9.6(429)	100.0(4444)
일하다 부당한 처우 시, 청소년을 도와주는 신고전화(☎1644-3119 또는 ☎1388)가 있음	23.2(998)	29.3(1262)	27.9(1201)	5.5(237)	5.1(219)	9.0(386)	100.0(4303)
아르바이트 시작 전에 어떻게 일하고 임금을 어떻게 받는 등의 내용의 근로계약서 2장 만들어서 사장님과 학생이 한 장씩 가져야 함	7.2(532)	33.3(2472)	28.6(2127)	7.3(544)	13.0(964)	10.7(793)	100.0(7431)
만15세 미만(중학교 2학년 이하)에게 일을 시킬 경우 고용주(사장)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11.8(444)	26.5(999)	30.1(1134)	11.2(421)	10.3(389)	10.2(385)	100.0(3771)
고용주(사장)가 청소년근로자에게 하루 7시간, 1주일에 40시간 이상 일을 시킬 경우, 청소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13.3(449)	28.9(972)	30.9(1039)	9.1(305)	8.8(297)	9.0(303)	100.0(3365)
고용주(사장)는 일을 그만둔 지 14일 이내에 말린 임금(아르바이트비)을 지급해야 함	6.3(143)	29.6(669)	34.4(778)	10.5(238)	10.1(228)	9.1(207)	100.0(2262)
4시간 일할 경우 30분의 쉬는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음	11.6(253)	23.6(515)	25.9(565)	12.0(263)	11.6(253)	15.4(336)	100.0(2185)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한번도 빠지지 않고 일한 경우,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음	14.7(223)	26.6(404)	26.9(409)	8.5(129)	12.5(190)	10.8(164)	100.0(1520)
고용주(사장)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아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등 보상 신청 가능	8.2(103)	31.7(397)	29.7(373)	6.3(79)	12.2(152)	11.9(149)	100.0(1254)
학교나 교육청에 알바신고센터가 설치돼 있음	22.2(197)	25.7(228)	27.8(247)	9.0(79)	7.5(66)	7.8(69)	100.0(887)

5. 정책 제언

1) 청소년 고용 사업장 감독 강화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은 고용노동부에 의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점검과 관계부처 합동 점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점검 대상 업체 수는 첫 청소년 근로보호 종합대책이 수립된 2005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³⁾ 연소자 증명서 등 서류의 비치 여부를 중심으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다 최근에는 최저임금 위반, 임금 체불 등 청소년에게 실질적 도움이 절실한 사항이나 최저임금 주지 의무 준수,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예방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가 점검 항목으로 대폭 확대된 것 역시 긍정적이다. 하지만 2005년 정부 대책 발표 이후부터 2013년에 이루어진 지도·점검에서도 법 위반 사업장이 평균 80%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정책의 실효성이 의심된다. 법 위반을 반복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대책 역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확충하고 법 위반 반복 사업장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사전 통보 없이 불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고,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영세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서류 조사 중심에서 벗어나 일하는 청소년과의 면접조사도 강화되어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시정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사후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경험하는 고통을 다층적으로 고려한 근로 감독 점검 표를 새롭게 마련함으로써 휴게시간 제공 여부, 모욕·폭력 경험, 노동안전도 등도 통합적으로 점검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화된 점검을 위해서는 근로감독관 수의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

2) 관련 노동관계법 교육과 홍보 내실화

(1) 홍보·캠페인

고용노동부는 2006년 10월부터 「일하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1318 알자알자 청소년 리더」를 선발(2010년 80명 → 2011년 120명 → 2012년 145명) 하여 청소년 주도의 홍보 활동도 전개해 왔다. 이와 함께 ‘청소년 알바십계명’ 홍보와 교육 자료를 학교에 배포하고, 최저임금 홍보자료와 연소근로자 표준근로

3) 고용노동부, 여름·겨울방학 기간 지도·점검 결과 발표자료 참고.

계약서 양식 등을 제작하여 사업체와 청소년단체, 구인·구직 사이트 등에 배포하는 정책도 펼쳐왔다. 2013년부터는 서면 근로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이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근로 계약서 주고받기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이처럼 정부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법 기준 홍보에 노력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여전히 미흡하다. 이번 조사에서도 고용노동부가 배포하고 있는 알바십계명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청소년은 단 10%에 불과했으며, 전반적으로 연소자 근로 관련 법제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홍보나 홍보자료의 제작·배포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배포된 자료가 실제 활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홍보 방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법령 중심의 홍보를 벗어나 구체적 권리 구제 방안에 대한 홍보와 접근하기 쉬운 신고·상담 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비추어 보건대, 2012년 정부 대책에서 또래 홍보단이라고 볼 수 있는 「청소년 리더」가 확대 운영되고, 연중 상시적으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홍보·점검 활동을 벌이는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제도가 신설된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⁴⁾ 그러나 「청소년 리더」가 2012년 30개 팀에서 2013년 45개 팀으로 확대되었다고는 하나, 재학 중인 학생들이 캠페인에 나설 수 있는 시간의 한계나 지역 분포를 고려할 때 전국을 포괄하기에는 그 수가 부족하다.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의 경우도 위촉 기간이 짧고 하루 활동 사례비가 적어 제도의 지속성과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청소년들이 근로 감독의 손길이 미처 미치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로 일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100명 정도의 인력으로 사업장 방문과 홍보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직접 위촉한 한정된 인원을 중심으로 홍보·캠페인에 주력하기보다는 관련 단체와 지역사회와의 통합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네트워크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생활공간 가까이에서 홍보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2) 노동인권·노동관계법 교육

청소년, 교사, 사업주에 대한 노동관계법 교육의 경우는 2005년 종합 대책에서 비중 있는

4) 고용노동부는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활동(2012.11~12월)을 통해 위반 및 의심사례 831곳을 적발하고 1만4449개 사업장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2012. 1. 15),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 수립 추진중: 중앙일보의 ‘방학은 알바 시즌...철만난 임금착취·인권침해’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정책으로 제안되었으나 제대로 추진된 적 없다. 교사, 사업주에 대한 교육도 시급하지만, 특히 청소년에게는 단순한 홍보보다는 노동인권 에 대한 감수성과 상황별 대처 방안 등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대응력을 기르는 데 효과적이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 외(2011) 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이번 조사에서도 청소년들은 주로 TV와 인터넷을 통해 노동 관련 법규와 기준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답했고, 학교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비율은 10% 미만대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에 비추어 보건대, 2014년까지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배치될 진로진학상담교사⁵⁾로 하여금 청소년 노동인권 에 관한 역량을 기르고, 「진로와 직업」 교과 수업을 통해 노동관계법 수업을 진행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담당 교사에 따라 교육 방식이나 내용, 비중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업무 과부하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진로진학상담교사에게만 일임할 것이 아니라 신입교사 연수, 관련 단체·지역사회와의 네트워킹을 통한 강사풀 형성과 지원 등의 보완책이 뒤따를 필요가 있다. 교과서에 관련 내용을 수록하여 교육과정 안에서 안정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3) 신고구제체계 내실화와 피해구제 강화

본 조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참고 계속 일했다’와 ‘그냥 일을 그만두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등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자신의 노동인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 생활공간 가까이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자 도입된 학교 안 ‘안심 알바 신고센터’는 센터와 근로감독관이 연계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하지만 청소년에게 직접 진정을 넣게 하거나 수업시간 중 지방 노동관서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사업주와 대질조사를 하고,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을 떠넘기고, 안심 알바 신고센터를 담당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처리 방침이 달라 혼선을 빚는 등 졸속 운영 사례들이 지적되어 왔다(청소년 노동인권네트워크, 2012). 구제 절차가 이렇다 보니 청소년들이 구제 신청을 했다가도 포기하거나 꺼리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센터가 설치되어도 학생과 교사에게 거의 홍보가 되지 않고, 담당교사도 자신이 담당자인 줄 모를 정도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도 개선 대상으로 지목됐다.⁶⁾

5) 진로진학상담교사는 2011년 3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도입된 교과 전담 교사(2급 정교사)로서, 「진로와 진학」 교과수업, 진로상담, 직업체험활동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비추어 보건대, 2012년 정부 종합 대책에서 알바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교육청 상담 창구 개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상담원 복지센터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다. 2012년 11월부터는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48명이 지정되고, 신고 대표전화(1644-3119) 개설, 모바일 앱 개발·배포 등을 통해 신고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 점도 주목할 만하다. 문제는 이 정책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지속되는가에 있다. 알바 신고센터 운영 지원, 전담교사·상담원·근로감독관 교육 강화, 운영 매뉴얼 제작·배포, 피해 신고 시 신속한 현장 근로 감독 실시, 타 지역과의 공조체계 마련 등이 주요 개선 방향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가 2013년 6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실시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 도우미 지원 사업'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⁷⁾ 이 사업은 사이버상담이나 문자상담 등이 청소년들의 권리를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고려하여 청소년들이 신고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권리 구제에 나설 수 있도록 현장 도우미(일명 해피워크 매니저)를 지정하여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피해 신고를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와 같이 상담 센터나 상담전화를 개설해놓고 청소년들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책방향을 보완한다면 좀 더 실효성 있는 신고·구제 절차의 운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4) 지방자치단체 지원망과 정부와의 협력체계 구축

일하는 청소년들의 생활세계에 밀착한 지원체계를 구성하고 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개 청소년들이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학교에 재학 중인 상황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차원의 정책이 내실 있게 마련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에 비추어 최근 경기, 광주, 서울 등 몇몇 교육청 차원에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강사단 양성과 운영, 노동인권교실 운영, 노동인권에 관한 교사 연수 진행, 관련 매뉴얼 제작·보급, 노동인권 교과서 개발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학생인권조례 등을 통해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광주교육청은 2011년 말부터 교육청 단위에 안심 알바 신고센터를 두어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 상담과 홍보 캠페인

6)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보도자료(2012. 4. 20), 「고용노동부 '안심알바신고센터' 운영개선을 위한 공개 촉구 서」 2011. 12. 26.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공개질의서, 「「안심알바신고센터」의 운영규정 및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공개질의서」, 안심 알바신고 센터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에 대한 공개질의서,
7)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도우미 지원사업 시범실시」 (2013.07.05)

등을 전개하고, 상담을 통해 접수된 사례를 지방 노동청에 연계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도 2013년 10월 청소년 아르바이트 신고 콜센터를 새로 설치해 운영하고 지방 노동청과 학교와 청소년기관에 설치된 안심 알바 신고센터 센터 담당자 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노력이 모든 시·도 교육청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시(市)나 구(區) 차원에서도 별도의 지원망 구축이 필요하다. 학교나 교육청에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청소년도 있고, 아르바이트가 집중되는 방학기간 동안 학교의 업무가 사실상 정지된다는 점, 교육청과 학교 단위에서는 청소년 고용 업소에 대한 직접적 감독이 힘들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치단체 차원의 별도의 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이에 비추어볼 때 최근 아르바이트 청소년 보호를 위한 별도 조례 제정을 추진하거나 청소년 인권 조례 안에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지원 조항을 삽입하는 등의 변화가 뒤따르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⁸⁾ 특히 서울시의 정책 시도가 주목할 만하다. 서울시는 2012년 아르바이트 청소년을 포함한 취약근로자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3년 7월에는 인권정책기본계획을 발표했고, 뒤이어 9월에는 '서울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을 선포했다. 권리장전은 아르바이트 청소년과 청소년의 새로운 권리를 추가하기보다 기존 법률에서 보장된 권리들을 다시금 재확인하고 있을 뿐이지만, 사용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시는 권리장전 선포와 함께 프랜차이즈 기업과 사용자 협회 등과의 협약 체결, 서울형 표준근로 계약서 보급, 노동인권교육 실시, 구(區) 단위 알바 신고센터 설치,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 실시,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 발간·배포 등의 사업도 동시 추진하고 있다.⁹⁾ 정부는 이와 같은 지자체 차원의 자발적 노력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정책 공조, 예산 확보와 지원 등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8) 경기도 군포시에서는 시의회 차원에서 아르바이트 청소년 보호·지원 조례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2012년 제정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9)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 보호 위한 권리장전 발표」(2013. 9.23.)

참 고 문 헌

- 국가인권위원회(2010).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 결정문.
- 김기현(2003). 일하는 고등학생들: 재학 중 시간제 취업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 사회학, 37(6), 115-144.
- 김기현, 김가람(2011).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방향과 과제.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방향과 과제 토론회 자료집. 청소년정책 연구원.
- 임영식, 남기성, 조금주, 정경은, 김윤나(2011). 201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 하인호(2011).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방향과 과제 토론회 자료집: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방향과 과제.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 Mortimer, J. T. (2010). The benefits and risks of adolescent employment. The Prevention Researcher, 17(2), 8-11.
- 고용노동부(2012. 1. 15),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 대책 수립 추진 중: 중앙일보의 '방학은 알바 시즌...철 만난 임금 착취·인권침해'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 http://www.korea.kr/policy/actuallyView.do?newsId=148754779&call_from=extlink 에서 2013년 6월 5일 인출.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2. 2. 10). 「연소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임금체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 위반 건수 765건으로 전체의 21.7% 차지」.
- <http://news.molab.go.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5&aid=2355> 에서 2013년 6월 5일 인출.
- http://www.kdi.re.kr/epic_attach/2013/R1303085.pdf 에서 2013년 6월 5일 인출.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2. 9. 7). 「여름방학기간 아르바이트 사업장 894개소 점검-금품 미지급,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등 법 위반 다수 발견」.

<http://news.molab.go.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5&aid=2893> 에서 2013년 6월 5일 인출.

청소년 노동인권네트워크 보도자료(2011. 12. 26).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공개질의서, 「「안심알바신고센터」의 운영규정 및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공개질의서」 안심알바신고 센터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에 대한 공개질의서.

청소년 노동인권네트워크 보도자료(2012. 4. 20). 「고용노동부 '안심 알바 신고센터' 운영 개선을 위한 공개 촉구서」.

한겨레(2012. 11. 18). “청소년 알바 ‘노예노동’ 내모는 사회…신고센터는 ‘개점휴업’”.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561204.html> 에서 2013년 6월 5일 인출.

세미나자료집 14-S06

2013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
취약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인 쇄 2014년 3월 1일

발 행 2014년 3월 2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문영사 전화 02)2263-5087 대표 김희자